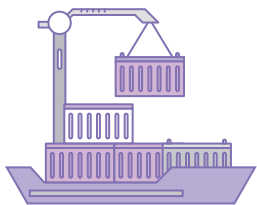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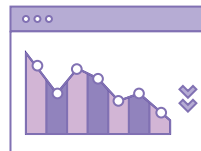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5013-0000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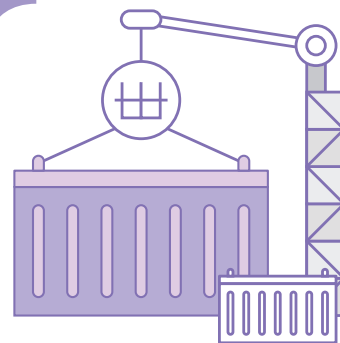
December 2025 vol. 04 (통권 52호)



무역·원산지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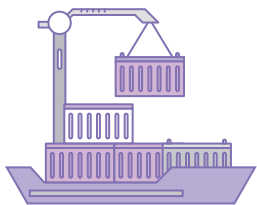
TRADE & ORIGI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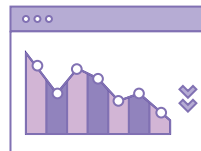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5013-0000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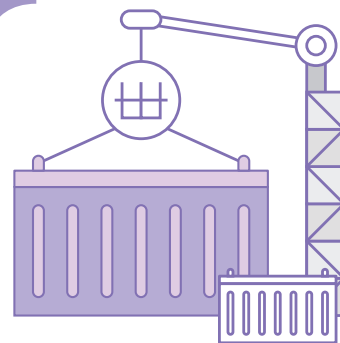


December 2025 vol. 04 (통권 52호)



무역·원산지 리포트

TRADE & ORIGIN
REPORT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ONTENTS

무역·원산지 리포트

December 2025 vol. 04

(통권 52호)



TRADE & ORIGIN 동향

08

1.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사례 모음 발간 배포
2.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상 성공적 추진
3. 산업부, 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대미 수출 통관애로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4.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5. 한-UAE, AI·원전 협력 등 MOU 7건 체결
6.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TRADE INSIGHT

20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한국 통상정책의 길

송영관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9

트럼프2.0 무역정책과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강승준 |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ANALYSIS

42

한-중 FTA 발효 10년의 성과와 과제

오윤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팀장

구지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53

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

박현혁 |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61

미국의 범위 판정 제도 현황 및 주요 사례

- 잔탄검을 중심으로 -

김세라 |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해외 통상 애로

78

국내 제조기업의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안내

신서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

FTA와 품목분류

88

미국 CBP 결정사례로 본 품목분류사전심사 (Advance Ruling)의 중요성

김성채 | PwC 관세법인 HS 연구원장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00

EU CBAM 관리시스템 보급 예정

- EU CBAM 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및 개발 기능 소개 -

박성만 |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운영팀장

105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 성공 사례

한지윤 | 예선테크 구매파트 차장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14

K-바이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다

송대진 | 셀트리온 관세사

통상 인포그래픽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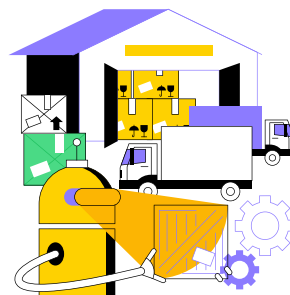
중국 수출입 교역과 우리나라 對중

수출 품목 동향

황수한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TRADE & ORIGIN REPORT



1.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사례 모음 발간 배포
2.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상 성공적 추진
3. 산업부, 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대미 수출 통관애로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4.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5. 한-UAE, AI·원전 협력 등 MOU 7건 체결
6.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TRADE & ORIGIN 동향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사례 모음 발간 배포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발간해 배포 중이다.

이번 자료는 2025년 3월 이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를 보다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철강제품(1편), 자동차 부품(2편), 식품(3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4편) 등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제5편은 실제 판정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 관세당국에 직접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적 규정보다 사례 기반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이라도, 품명·특성·용도에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었지만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된 바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 책자를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상 성공적 추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이 제도는 FTA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는 국제무역에서 원산지의 신뢰성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와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하고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판정 교육, 자율점검 작성 실습, 모의 사후관리 점검 등 원산지 사후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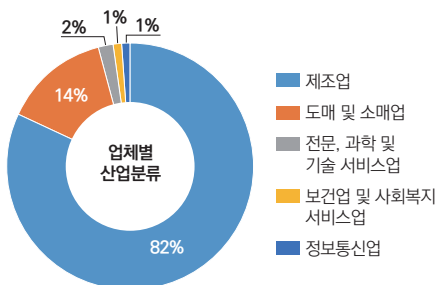
올해는 총 87개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5.3%의 기업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참여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현행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참여 기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적 지원, 나아가 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하며, 향후 사업의 발전과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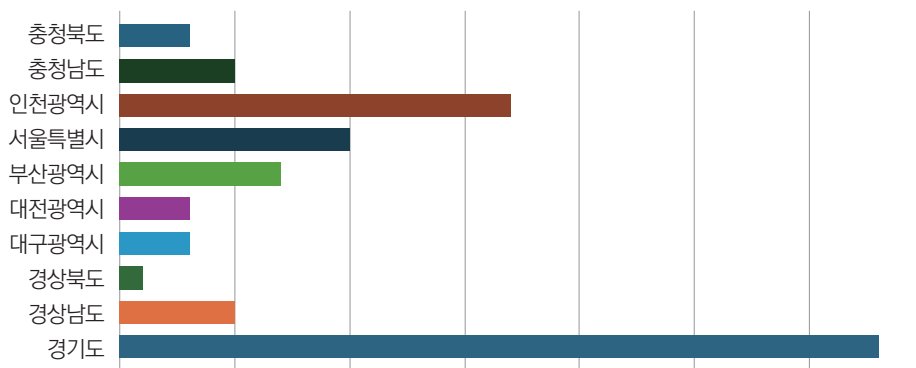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내년에도 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복잡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원산지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제조업	71
도매 및 소매업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정보통신업	1

업체별 참여지역 통계



경기도	33	부산광역시	7
경상남도	5	서울특별시	10
경상북도	1	인천광역시	17
대구광역시	3	충청남도	5
대전광역시	3	충청북도	3

본 소식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지원실 원산지관리팀(031-600-079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대미 수출 통관애로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12월 1일, 미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대미 수출 통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변화된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이해 현황과 적용실태, 주요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비특혜 원산지기준에 대한 사례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송경은 연구기획실장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기준 사례별 접근방안’을 주제로 최신 관세부와 현황, 232조 품목 관세 범위 확대, 높은 중간재 의존도가 한국 기업의 수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산업별·사례별 비특혜 원산지 판단, 복잡한 생산공정에 따른 분쟁 가능성, 미국의 샘플링·검사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CBP E-Ruling 활용 전략, 미국의 통상·관세동향 지속 모니터링, 판정정보 제공 등 기재부·산업부·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각국별로 상이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특정국의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트라,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은 자사 수출 품목이 미국의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현지 시간 기준 12월 15일에 마무리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고 자국 경제에 수십억 규모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던 무관세 교역이 연장되면서 영국의



사진 : BBC News

제약, 자동차 제조, 주류 및 금융 서비스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은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정 타결 소식을 발표했으며, 기존 협정으로부터 개선된 협상 내용으로는 원산지 기준 개선과 정부조달·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디지털 규범 및 공급망 협력과 같은 신통상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¹⁾

그 중, 원산지 기준 개선은 기업의 실무적 측면에서 볼 때 對영국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 분야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협정에서는 해당 기준이 25%로 완화된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산출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활용하고 영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함께 완화되어, 화장품 등 화학제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국내 생산만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1) 개선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타결<2025. 12. 16(화)>”에서 확인할 수 있음



따라 국내 기업의 對英 수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무역의 98%는 계속 무관세로 유지된다. 이는 EU가 한국과 맺은 조건과 동일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과 한시적으로 유지해 온 조건이기도 하다.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고, 이 협정은 2021년 발표됐다.

이 기존 무역 협정은 오는 2026년 1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새 협정으로 20억 파운드(약 4조원) 규모의 영국 수출 시장은 관세 인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UAE, AI·원전 협력 등 MOU 7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1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과 아크부대 파병 등 수십 년간 구축된 신뢰를 재확인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영구적·불가역적 수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80년 수교 이래 한국과 UAE는 에너지, 건설·인프라, 교역, 투자, 국방·방산, 우주, AI 등 첨단기술, 보건·의료, 농업,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바라카 원전, 아크부대 파견, 공동 위성 개발(에티하드샷·두바이샷·칼리파샷 등)은 양국 협력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UAE의 장기 국가 비전 “Centennial 2071”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본 전방위 시너지 창출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



사진 : 대통령실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사항에는 ▲AI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글로벌 공동 진출 ▲국방 공동개발·현지생산 ▲물 기술 혁신 협력 ▲의료 R&D·K-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미래세대 교육 교류 확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UAE K-City'와 같은 상징 사업을 발굴해 중동·아프리카·유럽 공동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담 고위인사 지정, 부처 간 고위급 교류, 양국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 설치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협력 진척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신뢰 속에 미래 세대에 평화와 번영을 전하는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2025년 10월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타결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2019년에 중단된 후, 2024년 3월에 재개되어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사진 : 산업통상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한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RCEP(2022년 발효)을 통해 기계·가전·화장품·식품 등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민감 품목인 자동차·철강·화학 등에서 개방이 제한되어 한국 주력 수출의 실익이 작았다.

이번 양자 FTA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상향·보완형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를,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288개 품목, 말레이시아는 68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개방이 제한되었던 민감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며, 한국은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시장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도입되며,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협력 분야가 신설되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 및 래칫(자유화 역진방지) 조항도 포함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말레이시아 FTA 분야별 주요 타결 내용 및 무역장벽 완화 현황〉

구분	기존 장벽 수준	완화 및 개선 내용	기대효과
상품 분야	자동차·철강·화학 등 민감 품목 중심 제한	한(94.8%)·말(92.7%) 자유화, 자동차·철강 단계적 철폐, RCEP 대비 완화된 원산지 기준(누적·CTH·중간재 포함)	교역품목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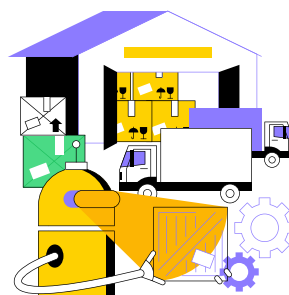
구분	기존 장벽 수준	완화 및 개선 내용	기대효과
서비스 분야	포지티브 리스트, 외국인 자본 제한	네거티브 리스트 최초 도입, 전기차·부품 투자제한 철폐, ISDS·역진방지조항(래치) 도입	시장자유화, 법적 안정성 확보
협력 분야	개별 MOU 수준 협력에 그침,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 등 신통상 협력 체계 부재	디지털무역·녹색경제·할랄 산업장 신설, 데이터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비관세조치 협의 절차 신설	신통상분야 제도화로 디지털·그린·할랄 연계 진출 기반 강화
규범·제도 분야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무역구제 등 절차상 차이 및 표준 미비	표준·인증 상호인정,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 절차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제도신뢰성 강화

자료 : 산업통상부, 코트라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편집

이번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규범과 제도 기반을 전면 개선한 첫 양자 협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단순한 수출자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실질적·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말레이시아의 NIMP 2030(신산업기본계획 2030)과 NETR(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의 목표와 맞물려 부품조달·디지털서비스·ESG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RADE & ORIGI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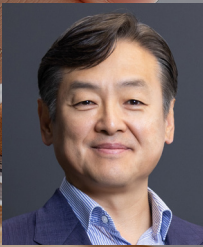


1.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한국 통상정책의 길
2. 트럼프2.0 무역정책과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한국 통상정책의 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 미국 우선주의 시대의 도래와 한국 경제의 도전

2025년은 글로벌 무역질서의 구조적 변동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기반해 구축되어 온 국제경제 규범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통상 관계를 양자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2기 행정부는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넘어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주의(Transactionism)’를 노골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직면한 압박은 상당히 고강도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존재함에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해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이는 국제 통상 규범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맹 관계를 경제적 손익 계산으로 환원하는 행태로서 기존의 외교·통상 질서와의 괴리를 드러낸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미국은 한국·일본·스위스 등 주요 무역흑자국에 미국 투자를 압박해 사우디 국부펀드(PIF)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익의 절반을 배분받는 조건을 관철했다. 이러한 요구는 경제적 힘의 비대칭성을 제도적 장치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접근이 전통적 협상 관행과 상식적 경제 논리를 넘어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은 국가 간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에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교차적으로 구사하는 반면, 캐나다·EU 등 전통적 우방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강경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동맹적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은 25% 상호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피했으나,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가 적용되는 불리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체제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선택한 대응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두 국가는 25~35% 고율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적용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10% 미만으로 방어하였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며 관세 장벽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유무역 기조 약화와 보호무역주의의 구조적 심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불확실성은 현재진행형이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자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이 보유한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생존·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사법부의 시간

이 시점에서 전 세계 통상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백악관이 아닌 미 연방대법원이다. 바로 1977년에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x) 부과 조치가 과연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제1조 8절은 “세금, 관세, 공과금,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이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의 통상 무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의회가 제정한 일련의 법률들이 대통령에게 통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공방은 바로 이 ‘위임된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헌정사적 질문이기도 하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세계 무역 질서는 또 다른 차원의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넘어, 트럼프가 주도해 온 통상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보편적 상호관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사법부의 제동이 만만치 않다. 이미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의심심장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tariff)’나 ‘조세(duty)’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즉, 규제와



과세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제한적 과세권 행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종식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IEEPA 외에도 관세 장벽을 쌓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이미 철강·알루미늄(50%)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25%)에 대한 고율 관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이 조치들은 유지될 것이다.

둘째, 1974년 무역법 제301조다. 이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1988년 ‘슈퍼 301조’로 강화되어 80~90년대 일본과 한국의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핵심 수단으로 쓰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역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1974년 무역법 제122조와 1930년 관세법 제338조의 부활이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338조는 미국 상거래에 차별적 조치를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특히 338조는 대공황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가 IEEPA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며칠 전인 12월 3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그는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NYT) 주최 ‘2025 딜북 서밋’에서 “무역법 301조·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구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이 조항들은 기간(150일 제한 등)이나 대상 국가의 범위에 있어 IEEPA보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세 공격의 ‘강도’와 ‘범위’는 다소 줄어든 수 있겠으나, 보호무역의 기조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리적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이 '신(新)고립주의'로 회귀하는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는 현재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거나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거대한 방향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미·중 갈등은 이제 단순한 무역 수지 불균형의 차원을 넘어섰다.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문제가 결합된 복합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신고립주의에 대응하여 각국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IEPA 판결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 즉 232조, 301조, 122조 등이 복합적으로 얹힌 더욱 정교하고 까다로운 통상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 찾아올 명확한 보호무역의 시대를 건널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3. 한국의 FTA 네트워크 : 현황과 한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파제는 다름 아닌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 네트워크이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며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는 한국 제품이 주요 글로벌 시장에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게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으며, 교역 상대국과의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보장하는 핵심 안전망이 되었다. 국제 무역 환경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FTA는 한국 경제의 가장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곧 질적인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FTA 정책은 지난 20년간 체결 건수와 시장 규모 확대라는 외형적 성과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FTA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FTA의 활용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들은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에 비해 이들의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으며, 그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잡하다.

가장 큰 난관은 복잡하고 상이한 원산지 증명 절차이다.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곧 FTA의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범이 된다. 여기에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내부적인 문제와 상대국의 교묘한 비관세 장벽까지 더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은 FTA 활용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상황에 이르기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FTA 정책은 단순히 ‘체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디테일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이 쌓아 올린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는 분명 강력한 방파제이다. 하지만 그 방파제 뒤에 있는 개별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때 비로소 ‘FTA 허브’라는 이름이 온전히 빛날 것이다. 정책 당국은 이제 외형적 지향 대신, 기업들의 손에 실질적인 활용 무기를 쥐여주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4. FTA 고도화 및 활용 전략 : 스파게티볼 효과의 극복과 공급망 재편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체결된 협정은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발판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다수의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 중 하나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다. 이는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가 스파게티 면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들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미국, EU, 중국에 수출할 때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한다. 생산기지와 공급망이 복잡할수록 규정 준수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FTA 활용률을 떨어뜨린다.

제도적 누적도 문제다. 협정 체결 시점과 협정 상대국의 산업 수준, 정치·경제 환경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구조적으로 상이한 채로 남아 있다. FTA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한 한국 같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규범의 불일치는 더욱 심각해진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조화, 최소한의 통일 원칙 마련, 혹은 메가 FTA에 기반한 단일 규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부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규범 수준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FTA의 원산지 규정을 조화(Harmonization)시키거나, 포괄적인 메가 FTA에 참여하여 규정을 단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핵심 광물 확보다.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미국, EU, 일본 등 전통적 파트너와의 FTA 네트워크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제 한국이 질문해야 할 지점은 “다음은 어디인가”이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세안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광물·중간재 공급망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며, 말레이시아는 주석, 필리핀은 니켈·코발트,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여기에 호주는 리튬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국이다.



이들 국가들이 광물 채굴에 그치지 않고 정련·가공·중간재 생산까지 산업 사슬을 확장한다면, 아시아 전역에 다변화(different nodes)와 안정성(security)을 갖춘 핵심광물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 되는 셈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채굴에 머물지 않고 정련·가공·중간재 생산으로 산업 사슬을 확장하면, 아시아 전역에 다변화와 안정성을 갖춘 핵심광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현실적 대안이 된다.

이를 실현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핵심이다. 양국의 기술·자본과 아세안의 자원·노동력·입지가 결합할 때 채굴→정련→가공→부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현지화가 가능해진다. 이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 복잡한 FTA 구조를 단순화하고, RCEP에는 없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완전 누적(Full Cumulation) 원산지 규정'을 통해 역내 원산지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베트남 부품을 활용해 멕시코로 수출해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스파게티볼 효과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공급망 설계의 선택 폭을 크게 넓혀 준다.

현재 아세안 11개국 중 네 나라(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CPTPP 회원이며, 인도네시아·필리핀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다. CPTPP가 확대될수록 역내 제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한국·일본의 투자를 촉진하여 핵심광물·중간재 공급망 다변화의 기반이 된다.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역내 GVC(Global Value Chain)에 효과적으로 편입한다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농산물 개방 부담 등으로 가입을 주저해 왔지만, 지정학적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민감 사안을 반영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한국이 CPTPP 회원국과 체결한 기존 FTA의 농식품 분야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일본의 CPTPP 농식품 관세철폐율 76.2%보다 높다.

CPTPP에 참여하지 못하면 향후 아시아 공급망 재편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광물 공동개발 및 현지 정련·가공시설 구축이라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통상 전략은 ‘관세 감면’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설계와 지역 규범 연계 중심의 2세대 통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 FTA의 개선 협상을 통해 누적 원산지 조항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맺음말 :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통상의 길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 우선”과 “중국 배제”로 요약되며, 이는 한국 제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며, 트럼프 관세는 철강·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동시에 중국 배제 전략은 한국이 중국산 중간재와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해온 공급망 구조 전체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미 초당적 합의로 굳어져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 질서의 후퇴는 결국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협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EU·중국·일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세계적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드문 국가다. 이 자산을 활용한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여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RCEP·CPTPP 등 메가 FTA의 누적원산지 제도를 활용해 핵심광물과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FTA를 추진해 핵심광물 확보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상수’다. 한국은 수동적 대응을 넘어, FTA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삼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G20에서 강조된 다자주의와 WTO 체제의 복원 또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트럼프 상호관세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한미FTA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2.0 무역정책과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IMPORT
TARIFFS



강승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1. 들어가며

2025년은 경제와 무역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한 해였다. 트럼프2기 미국의 무역정책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고, 그럼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은 유지되었다. 그간 국제 무역질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를 중심으로, 관세, 수출입 제한 등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지향해 왔다. 이는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Rule-based)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무역질서 하에서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국내 제조업의 쇠퇴를 경험하였다. 이는 미국 경제의 약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위협의 주요

* 본 기고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소속 로펌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멕시코를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였고, 관세 정책이 그 핵심이다. 이는 기존 ‘규범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질서’에서 ‘힘에 기반한 양자간 무역 질서(Power-based)’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기존 경쟁적 자유화로부터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과 시장개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전략산업의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연계화하여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경제, 무역 측면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다(하기 도표 참조. 출처는 <https://www.policyuncertainty.com/>). 현 시점 기준으로 주요 통상국과의 관세협상이 일단락되기는 하였으나, 곧 현실화될 여러가지 변수, 예컨대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 미국 내 주요 경제지표(물가인상율, 실업률 등), 무엇보다 2026년 11월에 진행될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Source: Baker, Bloom, Davis, <http://www.policyuncertainty.com>

2. 트럼프2.0 무역정책 개관

트럼프2.0 무역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① Rebalancing, 즉 교역상대방과의 불균형 무역관계의 재조정이다. 이는 후술할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② Manufacturing Renaissance, 즉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소비·금융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 “생산 중심 경제”(Production Economy)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후술할 Trade Expansion Act of 1962(무역확장법) Section 232에 근거한 소위 품목별 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③ Strategic Decoupling, 즉 대중 견제정책 강화이다. 트럼프1기 이후 대중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이러한 기조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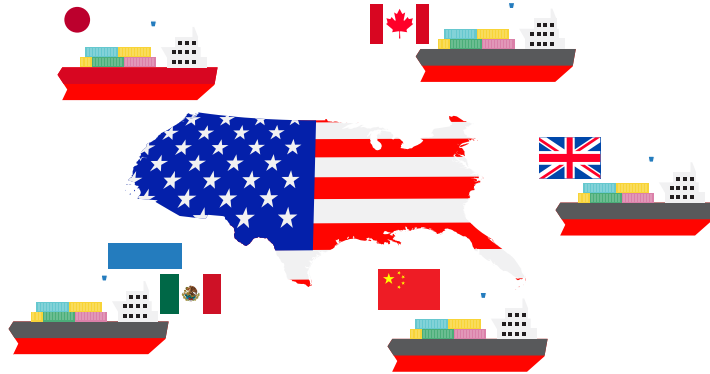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하고, 트럼프2.0 무역정책은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국가별·이슈별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이하는 본 기고문이 작성된 2025년 12월초 기준의 설명이므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나 외교적 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상호 관세는 아래 품목별 관세와 달리, 특정 물품이 아닌 특정 국가별로 부과되는 특성이 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당초 25%의 상호관세율이 예고되었으나, 양국 간 협상을 거쳐 현재 15%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품목별 관세(Product-specific Tariffs)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가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되는 상호 관세와 달리 물품별로 부과된다. 핵심 개념은 해당 수입물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해당 수입물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 및 권고 조치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에 대해 현재 5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현재 25%의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외 현재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 중인 품목으로는 구리(50%), 목재(10-25%), 중·대형트럭(25%)이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상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가별·이슈별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이슈별 관세가 역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의 인접국으로 마약 및 불법 이민 통로로 지목되어 온 멕시코(25%), 캐나다(35%)와 펜타닐 및 원료 공급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기존 20%, 최근 10%)이 대표적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대상이 아니다. 국가별·이슈별 관세는 교역상대국과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 및 상대국의 대응방향 등에 따라 더욱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2기의 무역정책은 1기에 비해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우선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1기는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한 반면, 2기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전방위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다음으로 1기 당시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반면, 2기에는 그 외에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을 비롯하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군의 종류 자체가 확대되었고 “파생상품”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품목별 관세의 부과 대상인 물품군의 범위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③ 마지막으로 2기에서는 1기 당시 없었던 펜타닐 수출, 불법이민, 사법권남용, 러시아 원유수입 등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관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 1기에 비해 대상국가, 대상품목 면에서 전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경제적인 요소는 물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국내외 경제, 정치적 상황이나 상대국과의 협상 등에 따라 무역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2.0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적어도 아래 요소들이 트럼프2.0 무역정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관세부와 권한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11월 초에 진행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코멘트는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중론으로 보이며, 따라서 판결 방향을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말부터 시작되는 대법원 휴정기 전까지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빠르면 2025년 내 또는 2026년 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2.0 무역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는 법적 근거와 형태를 변경하여 임기 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경제지표

트럼프2기의 무역정책은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우선 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는 미국의 성장률, 실업률, 물가, 인플레이션, 금리, 무역수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즉, 트럼프2기의 무역정책이 성공하려면, 대체로 미국 내 성장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용과 생산 구조가 안정적이거나 개선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할 것이다. 경제분석 기관들은 대체로 트럼프2기의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트럼프2기 무역정책의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2026년 11월 3일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2기의 무역정책에 따른 효과는 중간선거 시점까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실업률과 같은 경제지표 및 실제 시장·경제주체의 체감 수준은 중간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2기 무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트럼프2기 무역정책 하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고려할 사항들

가장 첫번째 질문은, ‘트럼프2기 무역정책 하에서 증가된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로 보인다. 즉, 한국 수출기업의 물품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 경우,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소위 ‘역직구’ 물품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내 수입자는 사업자일 것이다)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수입자 측에 관세 증가분을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국 수출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 증가분의 전부 또는 상당분을 수출가격 인하를 통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에 따르며, 이 경우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기본적으로 물품가격) × 관세율(%)”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품목별로 추가 “관세율”을 설정하였으므로, 추가 관세율의 대상 여부, 즉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와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인지에 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론 관세가 관세율과 관세표준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관세표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원산지’란 무엇인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특혜원산지(preferential country of origin)’와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country



of origin)로 구분된다. 전자는 FTA와 같은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기준이 세번(HS Code)별로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과 같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2기의 추가 관세는 FTA 특혜원산지와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즉, 미국 국내 기준에 따른 비특혜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관세법과 연방규정에 의거하여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판례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특정 국가에서의 가공을 통해 name(명칭), character(성격/성질), use(용도) 측면에서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물론 모든 원재료부터 최종 가공까지 모두 특정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이 용이할 것이나, 수입 원재료나 부품을 이용해서 특정국에서 최종 가공을 한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판단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원산지 판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 회피를 위해 환적된 물품(우회수출)으로 판단될 경우 상호 관세 대신 4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해 False Claims Act*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5년 8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무역 사기 TF (Trade Fraud Task Force) 공동 발족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 손해배상(3배)과 민사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쟁사 등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인은 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우리 관세청 역시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이민국의 복합적 성격)과 공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으로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제공하는 사전 판정(Advance Ru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되는 물품 관련 부품/원재료의 출처, 국내외 제조 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추후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사전 판정 회신에서 인정된 원산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B. 품목별 관세의 대상 여부 확인

원산지 외에도, 수출되는 물품이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물품의 미국 세번(HTSUS: 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을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별 관세는 세번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번 판단은 추후 상당한 관세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세번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사전 판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품목별 관세는 파생상품 리스트를 통해 확장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시점마다 유효한 파생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품의 제조 단계, 부품 구성 등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료 대체, 제품구성/디자인 변경, 기능 변경, 제조 단계 변경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세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50%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의 경우, 미국 수입시 제련국과 주조국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제련국과 주조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러시아산에 적용되는 200%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C.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의 특수성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물품 중 철강, 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나 비철강, 비알루미늄 부분을 구분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50%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은 한국 수출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의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를 비롯한 생산 관련 자료를 완비, 보존하고, 비철강, 비알루미늄 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안분과 설명자료를 미리 구비할 필요가 있다.

D. 관세평가의 문제(First Sale Rule)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기본적으로 물품가격) × 관세율(%)”의 공식으로 산출되므로, “관세의 과세표준”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법 및 행정해석상 인정되는 First Sale Rule(최초 판매원칙)의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물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까지 복수의 거래를 거치는 경우(예: 공장에서 중간상에 미화 50불에 판매하고, 중간상은 미국 수입자에게 미화 100불에 판매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최초 거래의 가격(동 예시에서 미화 50불)을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First Sale Rule은 상당한 이점이 있으나, 적용 요건이 엄격하고 최초 거래시부터 최종 거래시까지의 거래구조와 실물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개별 사안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판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 UFLPA도 잊지 말아야

2021년 제정된 미국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수입자는 수입 물품이 위구르,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공급망 전체 단계를 실사하고, 원재료의 출처, 제조 공정의 위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증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소명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기본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한 내 소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UFLPA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문제가 아니라 미국 수입 자체가 불허되며, 보다 강력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F. 위반사항 발견시 Prior Disclosure 제도 활용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Prior Disclosure(사전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의 수입신고상 오류나 관세의 과소납부 사실을 확인한 수입자는 관세국경보호청이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추가 관세와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벌금의 대폭 감경, 형사조사나 행정제재 예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사실 및 그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신고서/증빙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4. 결어

트럼프2.0 무역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수입은 아래 도표와 같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곧 있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판결 방향과 무관하게 현재 관세 정책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혹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의거한 다른 형태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ariff revenue has soared after Trump's substantially higher levies

Monthly tariff revenue collected by the US government



Note: Treasury statements record tariff revenue as collections from customs duties and excise taxes.

Source: Treasury Department daily statements
Graphic: Elisabeth Buchwald and Matt Stiles, C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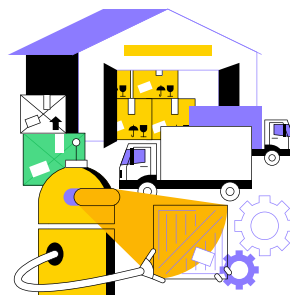
출처 : CNN Business 기사

우리 수출기업에서, 궁극적으로는 판매처(미국 vs 그외 국가들)에 따라 원료/부품의 소싱처와 제조 공정을 재구성하는 단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최소한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의 부과대상인지, 철강/알루미늄

제품(파생제품 포함)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가 얼마인지 등에 수출 물품과 그 소싱, 제조 전반에 관해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국 정부의 요청시 신속하게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사전 판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 ORIGIN REPORT



1. 한-중 FTA 발효 10년의 성과와 과제
2. 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점으로
3. 미국의 범위 판정 제도 현황 및
주요 사례
 - 잔탄검을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 10년의 성과와 과제



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팀장



구지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한 협정으로, 발효(2015. 12. 20.) 10년을 맞은 현재 그 성과와 과제가 교역 환경 변화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은 대중 수출 비중의 완만한 조정과 대중 수입 의존 심화가 동시에 진행된 교역 재편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수출·수입 모두에서 FTA 활용률이 80~90%대 수준에 이르러, FTA 활용 정착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 교역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FTA 정책은 단순한 활용률 제고를 넘어, 교역·공급망의 전략적 관리, 산업·기업 규모별 맞춤형 활용 지원, 제도·인프라의 체계적 개선, 협상 고도화 및 다자 협정 연계를 중심으로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중 FTA는 단순히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상정책에서 중국이라는 핵심 교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발효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중 FTA를 평가하는 목적은 협정 체결 자체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이 협정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산업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디지털 규범 강화 등 통상 환경 전반의 변화는 한-중 FTA를 ‘이미 체결된 협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제도적 틀’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고는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교역 구조 변화와 FTA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체감 효과와 애로를 종합해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2.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 구조 변화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양적 확대와 함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절대 규모 기준으로는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대 내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대중 수출 비중은 2020년 25.9%에서 2024년 19.5%로 완만하게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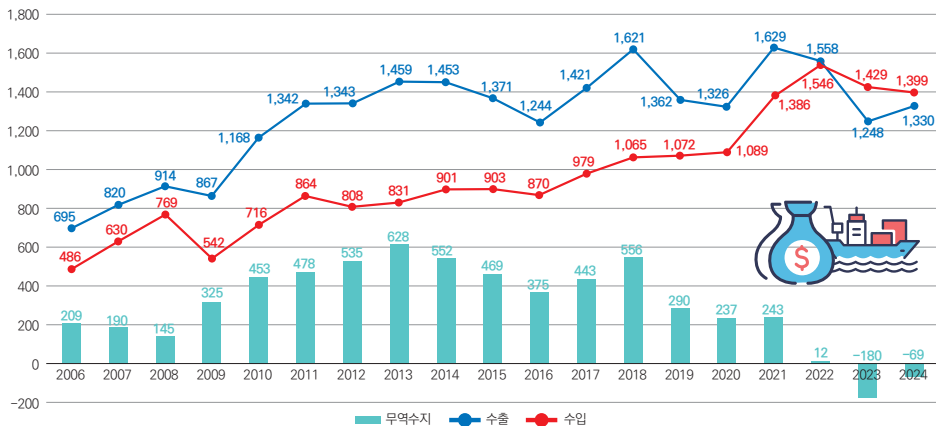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FTA 발효 전(2006~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143억 달러였고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3,568억 달러로 대중 수출 비중은 약 24.3%였다. FTA 발효 후(2016~2024년)에는 대중 수출이 1,418억 달러로 약 24.1% 증가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이 27.6% 증가하면서 중국의 상대적 비중은 23.8%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한-중 FTA가 대중 수출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국이 전반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효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발효 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7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4.6%를 차지했으나, 발효 후에는 1,204억 달러로 약 61.6% 증가하며 비중도 17.8%로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중간재·부품·소재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주요 투입재 조달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이 이전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후 모두 약 4.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절대 규모로는 증가했으나, 중국의 전체 수입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비중이 9.9%에서 8.2%로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산업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은 대중 수출 비중의 점진적 조정과 대중 수입 확대가 병행되며 교역 구조가 재편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가 단순한 수출 확대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산업 조정 과정 속에서 양국 간 교역의 방향과 성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온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3. 한-중 FTA 발효 전후 산업별 교역 구조와 공급망 변화

한-중 FTA 발효 이후 대중 수출은 산업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등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는 대중 수출이 증가하며, 한국이 중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 공급국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는 한국산 고기능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유지·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섬유류나 일부 광산물 등 과거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던 품목에서는 대중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글로벌 생산기지 이동, 원가 구조 변화,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중 수출 전략이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기능·품질·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822	1,640	99.4	59.1
	농산물	477	872	82.8	69.0
	수산물	260	558	114.6	36.2
광산물	전체	7,412	6,828	-7.9	16.2
	광물성연료	7,143	5,791	-18.9	17.6
	금속광물	186	896	381.3	1.2
화학공업제품	전체	21,385	30,198	41.2	70.6
	석유화학제품	17,729	18,959	6.9	36.3
	정밀화학제품	2,621	9,207	251.3	200.2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2,287	3,074	34.4	34.3
	플라스틱제품	1,789	2,715	51.8	75.3
	고무제품	177	277	56.3	2.1
섬유류	전체	2,680	1,709	-36.2	-8.2
	직물	1,693	716	-57.7	-17.5
	섬유제품	491	614	25.3	11.3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생활용품	전체	1,190	1,409	18.4	46.2
	생활용품	948	1,249	31.7	55.4
	기타 생활용품	242	160	-34.1	-7.7
철강금속제품	전체	7,340	8,061	9.8	21.8
	철강제품	4,328	4,215	-2.6	13.3
	비철금속제품	2,785	3,655	31.2	49.1
기계류	전체	17,997	18,561	3.1	13.6
	정밀기계	1,416	5,146	263.5	150.4
	기초산업기계	4,384	4,380	-0.1	39.3
전자전기제품	전체	53,116	70,214	32.2	37.4
	전자부품	37,507	55,480	47.9	92.4
	산업용전자제품	11,256	11,823	5.0	-16.4
잡제품	전체	64	118	84.8	106.2
	인쇄물	7	44	557.1	16.6
	의료위생용품	11	32	191.9	167.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 다수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5년 62.0%에서 2022년 67.5%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에는 64.6%를 기록하며,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자원·에너지 품목과 섬유류에서는 중국 외 국가로의 조달 다변화가 관측되나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한국 제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8〉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입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입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4,073	4,877	19.7	57.1
	농산물	2,329	2,933	25.9	43.0
	수산물	1,046	1,295	23.9	79.8
광산물	전체	3,037	2,037	-32.9	5.9
	비금속광물	1,019	1,083	6.3	18.1
	광물성연료	1,815	706	-61.1	3.1
화학공업제품	전체	7,236	16,991	134.8	16.4
	정밀화학제품	3,373	10,267	204.4	58.9
	석유화학제품	1,398	2,786	99.3	-16.4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1,096	2,189	99.8	-2.3
	플라스틱제품	692	1,628	135.2	-2.2
	고무제품	292	463	58.4	58.8
섬유류	전체	5,564	6,933	24.6	97.3
	섬유제품	3,711	4,917	32.5	175.5
	직물	1,013	1,196	18.2	17.8
생활용품	전체	4,345	7,877	81.3	105.3
	생활용품	3,204	6,261	95.4	89.2
	기타 생활용품	1,141	1,617	41.7	191.6
철강금속제품	전체	12,604	12,525	-0.6	-14.0
	철강제품	10,458	9,356	-10.5	-33.5
	비철금속제품	1,940	2,667	37.4	12.3
기계류	전체	6,664	12,403	86.1	33.9
	수송기계	2,194	3,836	74.9	49.6
	기초산업기계	1,931	3,126	61.9	-4.9
전자전기제품	전체	29,709	54,230	82.5	41.9
	전자부품	12,595	27,211	116.0	35.9
	산업용전자제품	10,535	16,781	59.3	55.8
잡제품	전체	118	312	165.3	11.2
	의료위생용품	30	118	298.5	42.6
	기타잡제품	21	82	296.7	-45.8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원가 절감과 조달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이 누적될 경우 공급망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즉 산업별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향후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별 역할 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한-중 FTA 활용 현황 : 제도 정착의 10년

한-중 FTA는 상품 양허 측면에서 발효 이후 최대 20년 이내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전체 품목의 약 92%를, 중국은 약 91%를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한국은 즉시 철폐 품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단계적 철폐 비중이 높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허 구조 속에서 FTA 활용은 빠르게 정착되었다. FTA 수출 활용률은 2016년 33.9%에서 2024년 83.1%로 크게 상승했으며,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는 활용률이 80~90%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계류와 철강·금속제품 등 제조업 기반 산업의 활용률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산업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34.6	51.6	73.8	76.4	51.6	62.8	59.5	87.9	92.4
광산물	53.2	59.7	90.7	92.5	93.6	93.2	95.0	81.7	91.7
화학공업제품	49.1	58.2	60.1	62.4	69.5	72.5	75.7	86.5	91.1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26.2	53.1	57.7	58.1	62.8	64.1	62.1	73.5	73.0
섬유류	21.6	37.3	43.3	45.8	58.7	58.5	46.1	47.2	51.2
생활용품	17.4	40.0	43.3	44.5	50.0	51.8	38.0	47.3	55.6
철강금속제품	31.4	46.3	51.8	58.3	59.2	48.4	50.0	69.3	70.0
기계류	27.9	46.3	53.1	42.2	54.4	53.2	53.4	71.6	73.0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자전기제품	15.0	42.9	37.9	59.3	54.7	46.7	26.6	48.3	88.6
잡제품	9.0	17.7	19.3	27.1	17.0	9.2	10.7	63.8	75.3
합계	33.9	49.7	55.0	57.2	65.0	64.7	63.3	73.3	83.1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FTA 수입 활용률 역시 2016년 58.1%에서 2024년 92.0%로 크게 상승하여, 관세 혜택이 가능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FTA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가 수입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산업별 한-중 FTA 수입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54.4	68.5	74.3	77.4	78.8	81.1	80.7	84.0	84.7
광산물	40.8	53.1	57.0	54.6	68.1	62.1	87.5	69.5	83.8
화학공업제품	73.8	82.9	86.7	89.0	93.2	94.8	95.2	96.0	96.1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59.9	73.0	78.1	81.9	87.8	89.9	91.3	93.1	94.5
섬유류	60.0	71.6	75.8	80.5	85.2	86.2	84.9	87.5	89.5
생활용품	51.9	63.3	69.2	75.6	79.8	82.1	82.2	85.2	87.9
철강금속제품	64.1	69.0	72.9	78.6	89.7	91.9	91.8	91.2	93.3
기계류	49.9	60.6	68.9	76.6	85.2	85.5	86.4	88.3	90.1
전자전기제품	50.2	60.6	70.2	78.5	80.6	82.5	86.0	91.6	93.4
잡제품	40.8	62.6	64.0	75.8	86.5	95.2	94.7	88.8	86.7
합계	58.1	68.6	74.9	80.1	85.1	87.0	88.5	90.7	92.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FTA 특혜대상 수출입 금액 비중의 변화 역시 교역 흐름의 재편과 연동되어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일부 산업의 비중은 감소했고, 수입에서는 중간재·생활용품 중심으로 특혜대상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중 FTA가 단순히 관세율을 낮춘 제도가 아니라, 실제 수출입 구조의 재편에 영향을 미친 제도였음을 의미한다.



[한-중 FTA 산업별 특혜 대상 수출입 금액 비중]

(단위: %, %p)

MTI 1단위	수출			수입		
	2016	2024	비중 변화 대상금액 비중	2016	2024	비중 변화
	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1	1.8	0.7	7.5	5.2	-2.3
광산물	4.6	3.1	-1.5	2.0	1.2	-0.8
화학공업제품	32.5	44.4	11.9	22.4	23.7	1.3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9	6.3	1.4	4.1	3.7	-0.4
섬유류	4.3	3.0	-1.3	10.6	8.8	-1.8
생활용품	0.5	1.9	1.4	5.7	10.1	4.4
철강금속제품	11.0	10.9	-0.1	7.4	7.8	0.4
기계류	24.8	12.7	-12.1	15.2	18.3	3.1
전자전기제품	16.2	15.8	-0.4	24.4	21.1	-3.3
잡제품	0.2	0.1	-0.1	0.7	0.1	-0.6
총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5. 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한-중 FTA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정책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6월 1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20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 조사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조사모집단: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2024년 수출기업
 - * 제외 사항: 비영리 기업, FTA 비대상품목 수출기업, FTA 미활용기업, FTA 활용 대표 품목의 대상금액 십만불 이하 기업
- 전체 응답기업 수: 총 120개 수출기업

대중 수출기업들은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 효과(52.5%)를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그 다음으로 바이어 요구 충족(45.8%)과 통관 간소화·우대(29.2%)를 주요 효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어 요구 충족]이 전체 수출기업 평균(41.2%)보다 대중 수출기업(45.8%)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수입업체들이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FTA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수출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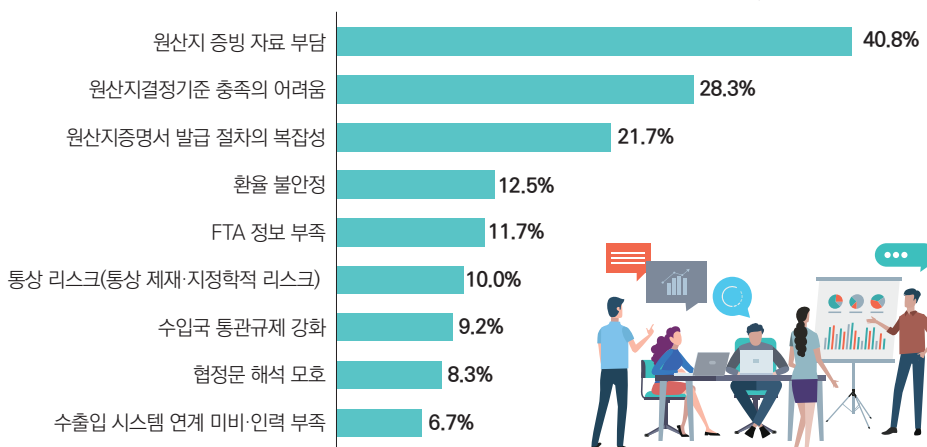
구분	관세 절감	바이어 요구 충족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대중 수출기업	52.5	45.8	29.2	23.3	7.5
수출기업 전체	50.1	41.2	27.1	22.8	5.3
비중 차이	2.4	4.6	2.1	0.5	2.2

그러나 동시에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 등 활용 비용과 관련된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활용률이 높아질수록 제도 운영의 세부 부담이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 홍보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발효 10년을 종합해 보면, 한-중 FTA는 교역 환경 재편과 제도 정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역·공급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보다 정교한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대중 교역을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핵심 품목과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 수준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반도체 소재, 기초화학,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조달, 국내 생산 역량 강화, 공급망 구축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고활용·고성장 산업의 경우 FTA를 장기 공급계약, 가치사슬 고도화,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저활용·저성장 산업은 활용 비용을 완화하고 방어적 활용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수익성 유지와 단계적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실무 중심 FTA 활용 가이드 제공, 디지털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확산, 교육·컨설팅 강화 등 제도·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필요 지원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대중 수출기업	32.5	23.3	26.7	5.8	8.3

나아가 서비스·투자·디지털·환경 등 신통상 이슈를 포함하는 한-중 FTA 고도화와 RCEP 등 다자·복수국간 협정과 연계는 향후 10년 한-중 FTA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발효 10년을 맞은 지금은, 한-중 FTA를 '얼마나 활용되었는가'의 관점을 넘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가·품목별 고율 관세 부과, 원산지 규제 강화 등 전반적으로 관세 중심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역시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출 물량 감소, 시장 경쟁력 약화 등 단기 충격과 중·장기적 비용 부담을 동시에 겪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기업은 총 331개로, 전기·전자 및 반도체(1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3%), 기계·산업 설비(12%)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규모 역시 대기업(23%),



중견기업(38%), 중소기업(39%)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 기준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친 영향과 주요 애로,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미 수출기업의 애로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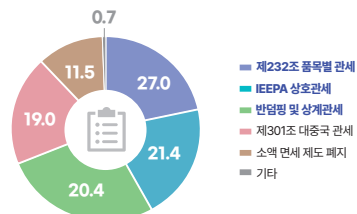
■ 국적 불문 확대되는 제232조 관세: 기업 불확실성의 핵심

하반기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관세정책은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27%)로 나타났다.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美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 및 트럼프 1기부터 지속되온 중국산 물품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정책으로 상호관세(21.4%), 제301조(19%) 등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 응답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 품목과 범위가 국적과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기업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관세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은?

품목별 관세부와 우려 가장 높음. 대미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

(단위: 비율)



답변	비율(%)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27.0
IEEPA 상호관세	21.4
반덤핑 및 상계관세	20.4
제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19.0
소액 면세 제도 폐지	11.5
기타	0.7
합계	100



■ 미 수출기업 10곳 중 6곳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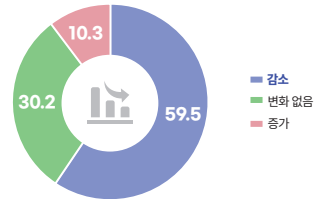
미국향 수출 물량은 조사 기업의 59.5%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 18.4%에 달해 관세정책의 실질적 부담이 수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 감소는 주로 기계·산업설비, 전기·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산업군에서 집중되었다. 이들 산업은 특히 제232조에 따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국 등 규제 민감 국가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 감소 영향은?

수출 물량 감소 약 60%, 변화 없음 30%, 증가 10%로 나타나 부정적 영향 큼

(단위: 비율)



수출 물량 변화	비율(%)
10% 미만 감소	24.8
20% 이상 감소	18.4
10% 이상 20% 미만 감소	16.3
변화 없음	30.2
증가	10.3
합계	100

■ 수출 물량 감소: 관세 부담 전가, 통관·물류 리스크 등 복합적 애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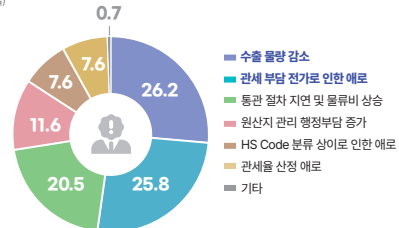
전체 응답 기업 중 60% 가량에서 미국향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미 관세조치에 따른 1순위 애로사항은 수출 물량 감소(2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25.8%),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20.5%)에 대한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여러 요소가 단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얹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관찰되는 수출 물량 감소는 단순한 물적 감소가 아니라 통관 지연에 따른 납기 불확실성 확대, 물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원산지·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의 확대 등 비용, 시간,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은?

수출 물량 감소 및 관세 부담 전가 애로 호소기업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비율)



답변	비율(%)
수출 물량 감소	26.2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	25.8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	20.5
원산지 관리 행정부담 증가	11.6
HS Code 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7.6
관세율 산정 애로	7.6
기타	0.7
합계	100



3. 주요 대응 전략

■ FTA 경험 보유 기업, 관세정책에 비교적 안정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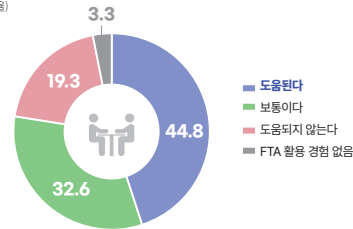
FTA 활용 경험이 미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기업의 4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FTA 활용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증빙 체계, 관세사 협업 경험, 계약 조건 설계 경험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이슈 대응에 실질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FTA 활용 여부가 단순한 특혜세율 적용을 넘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자체를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은 최근 미국 정책 환경에서 핵심 경쟁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FTA 활용이 미국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되나?

도움된다 응답 44.7%, 도움되지 않는다 19.3%

(단위: 비율)



답변	비율(%)
매우 그렇다	12.5
대체로 그렇다	32.3
보통이다	32.6
별로 그렇지 않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3.6
FTA 활용 경험 없음	3.3
합계	100

■ 미국발 리스크 현실화에 기업은 다층적 대응 전략 가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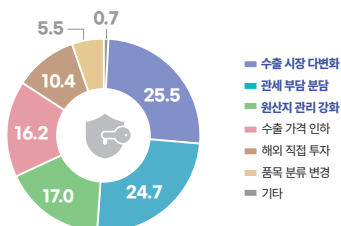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전략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용 가능한 기업의 대응 전략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전략은 수출시장 다변화(25.5%)였다. 미국 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미국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1위 수출시장 다변화, 2위 관세 부담 분담, 3위 원산지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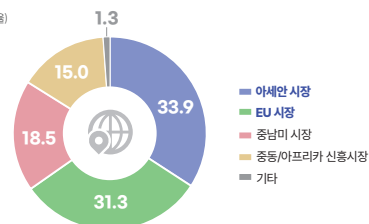
(단위: 비율)



수출시장 다변화 선호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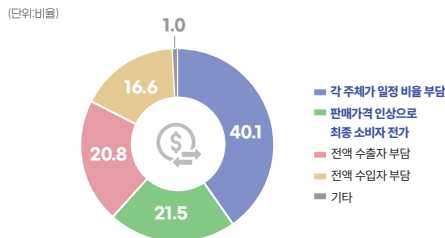
1순위 대체 시장은 아세안과 EU 시장 중심, 후순위 대체 시장은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 시장 선호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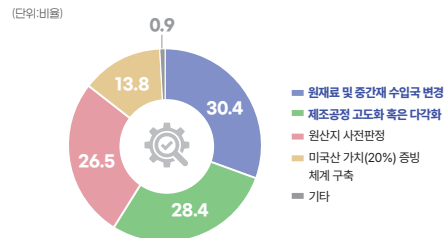
미국의 관세 부담 분담 선호 방법은?

거래 주체별 협의하여 일정 비율 분담을 가장 선호, 소비재 상품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 방법을 선택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원재료 공급망 변경 또는 제조공정 다각화를 통한 한국산 편정 전략을 가장 선호, 원산지 사전판정을 통한 원산지 리스크 예방 전략도 선호



것이다. 다변화 대상 지역으로는 아세안(33.9%)과 EU(31.3%)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변동성이 낮고, 현지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증·규제 대응, 유통망 확보, 마케팅 비용 부담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진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관세 부담을 분담(24.7%)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급자·수출자·수입자 등 각 거래 주체별 공동 부담 방식(40.1%)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 부담을 전액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16.6%에 그쳐 바이어 중심의 협상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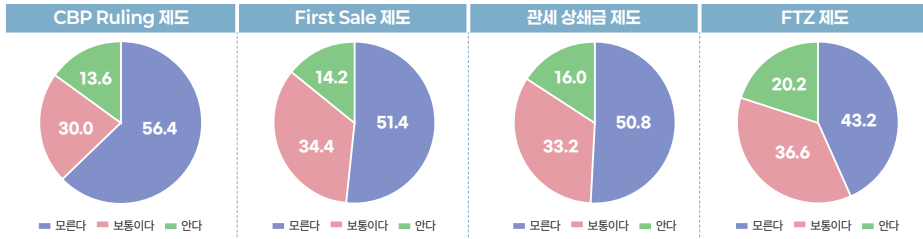
세 번째 대응 전략은 원산지 관리 강화(17%)다.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선호 방안으로는 원재료 및 중간재 조달처 변경(30.4%), 제조공정 고도화 및 다각화(28.4%),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26.5%) 등이 주요 전략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및 중간재 조달처를 변경이 1위를 기록한 것은 최근 미국 내 노동·인권 규제 강화,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제재 지속, 국가별 고율 관세 적용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산 원·부자재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4. 제도 인식 수준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미국 측 제도에 대한 이해 낮은 편, 상대국의 활용가능한 제도 정보 제공 필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등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CBP Ruling 제도는 응답 기업의 56.4%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First Sale 제도 또한 과반인 51.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관세 상쇄금 제도(모른다 50.8%), 미국의 관세 유예·면제 구역인 FTZ 제도(모른다 43.2%) 역시 활용 가능성에 비해 인식률이 낮았다.

이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관세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급망·원산지 리스크 대응이 강조되는 시기에 사전판정 제도나 First Sale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은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 부족이 단순한 절차 이해 부족을 넘어 관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 원산지·품목분류 오류 리스크 확대, 수입자 중심의 협상 구조 고착 등으로 이어지며,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될 경우, 제도 활용에 대한 역량 격차가 고착되어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 구축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관세 환경에 대한 기본 안내를 넘어, 미국 내 활용 가능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과 실무 중심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우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인식 자체는 높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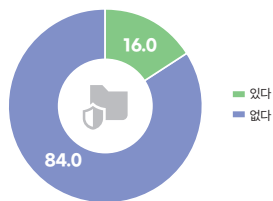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국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공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 지원 경험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한 정책 지원 경험은?

직접적 지원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84%로 높음, 정부 지원 사업의 인식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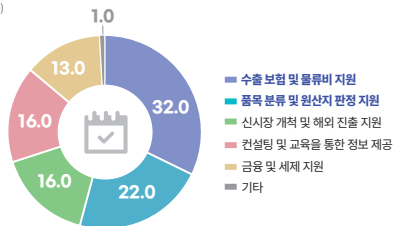
(단위: 비율)



선호 정책의 형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이 1순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 판정 지원이 2순위에 해당

(단위: 비율)



미 관세정책에 대한 정책 지원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 기업의 84%가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경험이었다고 답한 기업도 대부분 단발적 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수출 현장에서는 여러 지원 항목이 있음에도 실제 지원이 현장의 수요와 충분히 맞물려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요 수혜 항목은 수출보험·물류비 지원(32%), 품목분류·원산지 판정 지원(22%),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1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의 효율성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그렇다	14	4.2
대체로 그렇다	66	20
보통이다	124	37.5
별로 그렇지 않다	74	22.4
전혀 그렇지 않다	30	9.1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모른다	23	6.9
합계	331	100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24.2%에 그친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1.5%로 더 높았으며,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인지도·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규제·제도 정보를 수집할 전담 인력의 부족, 원산지·품목분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어 기반 정책 문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지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 규모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 물량 감소를 경험하였고, 제232조 중심의 고율 관세가 확대되면서 산업별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가 집중된 점은 향후에도 관세정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대응 전략으로 시장 다변화와 관세 부담 분담, 원산지 관리 강화를 선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규제 대응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제도 활용 역량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CBP Ruling, First Sale 등 미국의 관세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장기적 대응의 취약 지점을 보여주는 만큼, 제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무 중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 절감·리스크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수많은 애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대응 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정교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가 이러한 지원체계 고도화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범위판정 제도 현황 및 주요 사례

-잔탄검을 중심으로



김세라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범위판정(Scope Ruling) 제도는 특정 제품이 기존에 발효된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는 관세 부과 대상 제품의 범위(scope)가 명확히 서면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제품 설명의 모호성, 새로운 형태의 가공·결합 제품 등장 등으로 인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연방규정집 19 CFR §351.225에 규정된 범위판정 절차를 활용하면 특정 제품이 명령문의 적용 대상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는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¹⁾’와 ‘표준 신청서²⁾’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1)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Scope Ruling Application Guidance)

2) 범위판정 신청서(Scope Ruling Application)



본 고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범위판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범위판정에서 적용되는 판단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범위판정 신청 절차

1) 개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제품을 설명하는 서면 설명, 즉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서면 설명은 명령의 범위를 정의하며, 서면 설명에 포함되는 제품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세율이 적용된다. 범위에는 (1)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과 (2)해당 제품이 분류되는 미국 HS코드(HTSUS)의 소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HS코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판단에서는 서면 설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로, 범위판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19 CFR 351.22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1년 9월 20일 대폭 개정되었다.³⁾

참고로, 상무부의 범위판정 결과는 상무부 전자기록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 송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2) 신청 절차

상무부는 제출된 범위판정 신청서가 요건과 서식을 모두 제대로 갖췄는지 검토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모두 영어 번역본과 원문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번역이 불완전하거나 제출 문서가 미비한 경우 신청서를 요건 미비로 간주해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언제든지 다시 신청서를 재제출할 수 있다.

3) 반덤핑·상계관세법 행정·집행 개선을 위한 규정(Regulations to Improv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86 FR 52300(2021년 9월 20일) 참조.

4) 2011년 8월 5일 이후 내려진 범위판정 결정문은 상무부의 전자기록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 시스템(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entralized Electronic Service System, ACCES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청서가 수용되고 범위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는 필요 시 서면질의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3) 신청서의 구성

범위판정 신청서는 상무부가 제시한 표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서식 요건과 각 항목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상무부는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신청서는 규정된 서식과 작성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는 크게 표지, 본문 신청서,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 신청서는 제I절부터 제V절까지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판정 신청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I절	일반 정보	• 신청 목적, 첨부 문서 목록,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내용 기재
제II절	제품 정보	• 다음 세 가지 정보를 기재해야 함 (1) (공개) 연방 관보 고시를 위한 정보로, 제품의 설명 정보(물리적 특성, 생산국·수출국·수입된 경우) 원산지, HS code(HTSUS), 용도 등)를 포함 (2) (비공개) 영업비밀을 포함한 상세 제품 정보(생산 이력, 생산량, 생산공정, 부품·재료 등)를 제공 (3) 법적 범위 진술(범위 해당 여부)
제III절	원산지 정보	• 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원재료와 완제품의 동일성, 물리적 특성 변화, 용도, 생산비용·부가가치, 제3국 생산공정, 투자 수준 등
제IV절	제품 수입	• 해당 제품이 미국 관세영역으로 소비용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명시(신청서 제출일 기준) - 수입된 경우·수입되지 않은 경우 각각 기재
제V절	범위판정 신청자 (또는 대리인) 정보	•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에 관한 기본 정보와 신청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사항 기재
부록A		• 범위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누락된 문서와 그 사유, 그리고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자가 취한 조치를 설명
부록B		• 범위판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관계 정보의 정확성을 인증하고, 제출물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또한 제II절부터 제IV절까지는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증빙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항목은 신청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무부가 인정하는 문서 유형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예시로는 사진, 사양서, 마케팅 자료, 거래자료(송장과 계약서를 비롯해 해당 수입 제품의 판매·구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기타 관련 상업 문서를 포함하여, 제품의 생산·판매·구매와 관련된 각종 문서 전반을 포괄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명확하고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하기 어렵거나, 요구된 문서의 완전한 판독이 가능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록 A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부록 B에서는 범위판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및 사실 관계 내용의 정확성을 인증하고, 신청서 및 관련 문서가 상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3. 범위 판단 기준

1) 1단계 : 서면 설명 및 1·2차 자료 검토

상무부는 범위판정에 있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며 범위의 서면 설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품이 서면 설명만으로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를 근거로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서면 설명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19 CFR 351.225(k)(1)(i)에 규정된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 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범위판정 관련 1·2차 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1차 자료	해당 명령과 관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초기 조사에 포함된 제품 설명, ▲상무부의 과거 또는 최근 결정(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 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등
2차 자료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사항 등

다만 2차 해석 자료가 1차 해석 자료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차 해석 자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해당 제품의 명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2단계 : 추가 고려요소(5가지)

상기 언급한 방법으로 범위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상무부는 다음의 5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다.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사용자의 기대, ▲제품의 최종 용도, ▲제품이 판매되는 거래(유통)경로, ▲제품이 광고되고 전시되는 방식. 이 중 다른 요소들보다 물리적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신청 제품이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거나, 물품이 전체 제품의 구성품인 경우 상무부는 추가 분석⁵⁾을 실시할 수 있다.

3) 원산지 판정

상무부는 범위판정 과정에서 필요 시 제3국 가공 제품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상무부는 ▲최종 완제품이 투입된 원재료 제품과 다른 품목 또는 종류의 동일성 여부,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 완제품의 용도를 검토한다. 또한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발생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해당 ▲가공 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투자 수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포함된다.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기준(19 CFR 351.225(j))]

- 최종 완제품이 투입된 원재료 제품과 다른 품목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인지
-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 제3국에서의 가공 공정 특성(복잡성)
-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 또한 상무부는 원산지 결정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istics)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 → 판정 기준의 핵심임

5) 19 CFR 351.225(k)(3)



상무부는 상기 언급된 요건들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제품의 핵심 부품이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형성된 장소를 가장 중요한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범위판정 원산지 판정 시 19 CFR 351.225에 따라 미국 CBP 등 다른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권한으로 판정한다.

4. 미국 상무부의 GPI社 잔탄검 범위판정 사례

상무부는 해당 제품의 반덤핑 명령의 적용 범위를 판정하기 위해 19 CFR §351.225에 따라 두 단계로 분석을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인 기존 명령 범위 해석(§351.225(k)(1))에서는 명령의 서면 설명, 초기 조사 기록, 과거 범위판정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다. 두 번째 단계인 원산지 판정(§351.225(j))에서는 생산공정의 특성, 생산비용 및 부가가치, 제품의 용도, 투자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했다. 아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무부 범위판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범위판정 신청 배경 및 요약

캐나다 소재 Gum Products International(GPI)는 중국산 잔탄검⁶⁾을 원료로 가공한 자사 식품 원료 제품(PureXan 80AN, PureXan 200AN, Quickxan 70)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고 캐나다산으로 확인될 것을 요청하며 범위판정(scope ruling) 신청서를 제출했다.

GPI는 해당 제품들이 중국산 잔탄검을 원료로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잔탄 내 아밀레이스 효소를 제거·비활성화하여 원료의 기능을 변형한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6) 잔탄검은 제품의 점도를 조절하는 첨가제로, 주로 식품·음료, 소비재, 의약품, 공업용 등으로 사용됨. 특히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미료, 음료, 베이커리제품 등 가공식품의 안정제 및 농화제로 쓰이며, 이외 치약·자외선 차단제에도 사용됨. 또한, 밀도 차이가 있는 성분들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화학적 용도(예: 석유 시추(oil drilling) 작업)로 활용됨[자료: Xanthan Gum from China, Investigation No. 731-TA-1203(Review) USITC Pub. 4839 at 6-7 (November 2018).]

특히 GPI는 이러한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및 맞춤형 조제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완제품은 캐나다산 신규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중국산 잔탄검에 대한 AD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해당 공정을 수행(아밀레이스 효소를 제거·비활성화)해도 제품이 명령 대상인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의 가공이 상무부가 범위판정 시 실시하는 원산지 판단 기준(물리적 특성, 투자 수준, 용도, 공정의 복잡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이 원산지를 바꿀 만큼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제품의 원산지가 여전히 중국임을 확정하고 반덤핑 명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대상 제품의 화학적 정의 (A-570-985)]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의 호기성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다당류다. 이 반복성 5당류 단량체 단위의 화학적 구조를 이루는 중추는 P-1,4-D-포도당 단당류 단위 2개인데, 이 중 두 번째 단위의 3당류 측쇄가 P-D-만노스-(1,4)- P-D-글루쿠론산-(1,2)-a-D-만노스 단당류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단의 만노스는 피루빌화할 수 있고 내부의 만노스 단위는 아세틸화할 수 있다.

2) 미국의 對중 잔탄검 명령의 범위(서면 설명)

상무부는 중국산 잔탄검(Xanthan G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대한 반덤핑 명령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반덤핑 명령의 해당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의 피복(coated)되거나 혼합(blended) 여부와 무관한 건성 잔탄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명령에 포함된 잔탄검의 물리적 형태는 용액, 슬러리, 입자 크기와 무관한 건성 분말, 비연삭 섬유 등에 해당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제품과 혼합된 잔탄검은 혼합의 결과물에 함유된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상기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잔탄검과의 혼합이 가능한 기타 제품으로는 설탕, 무기물, 소금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의 호기성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다당류다. 이 반복성 5당류 단량체 단위의 화학적 구조를 이루는 중추는 P-1,4-D-포도당 단당류 단위 2개인데, 이 중 두 번째 단위의 3당류 측쇄가 P-D-만노스-(1,4)- P-D-글루쿠론산-(1,2)-a-D-만노스 단당류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단의 만노스는 피루빌화할 수 있고 내부의 만노스 단위는 아세틸화할 수 있다.

동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 상품은 미국 HS 코드(HTSUS)의 제3913.90.20호, 제3913.90.2015호, 제3824.99.4900호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HS 코드(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대상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3) 상무부의 판단

(1) 제품 등급/종류의 동일성 여부

GPI(Gum Products International, Inc.)는 자사 제품이 단순히 잔탄검이 아니라 여러 원료가 결합된 가공품이며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및 용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잔탄검 생산 과정에서 잔토모나스 세균이 생성하는 아밀레이스는 내열성이 강하여 상업용 잔탄검에 잔여물로 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잔여 아밀레이스는 식품 내 전분을 분해하여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PI는 아밀레이스 잔여물을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자사 제품이 일반 잔탄검의 HS 코드(HTSUS, 제3913.90.2015호)가 아닌 식품 조제품(제2106.90.9898호), 소스 조제품(제2103.90.9091호), 또는 수프 조제품(제2104.10.0020호)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명확하게 기술된 화학적 구조(5당 다당류)에 해당하므로, 이 제품들의 등급이나 종류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공정이 원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최종 제품이 여전히 중국산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등급과 종류의 제품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무부는 명령 대상 범위에서 관세 분류(HS 코드)가 편의 제공 및 통관을 위한 참고용에 불과하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GPI의 HS 코드 분류 주장이 범위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GPI 제품들이 특정 용도에 맞게 “배합·혼합 가공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명령 범위(서면 설명)에 이미 “설탕·무기물·소금 등과의 혼합 가공품(잔탄검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GPI는 자사 제품의 잔탄검 함량이 명령 대상 제외 기준인 건조중량 15%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상무부는 “혼합 결과물에 함유된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2) 물리적 특성

GPI는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GPI가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GPI의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 주장을 경미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상무부는 또한 범위 문언이 제품의 물리적 형태 변화가 아닌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명령의 대상 범위는 다른 제품과의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잔탄검 자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의 다른 잔탄검 생산업체가 1994년부터 아밀레이스 특성을 명시한 사양의 잔탄검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점을 제시하며, GPI의 '독점 기술' 주장을 반박했다.

(3) 최종용도

GPI는 자사 제품(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이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일반 잔탄검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GPI는 초기 반덤핑 명령 조사 당시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PI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TMB 440AE, Inc. v. United States(2020) 판례를 인용했다.

상무부는 GPI 제품이 식품·음료 분야에서 잔탄검으로 사용·표기되며,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탄검과 용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GPI의 주장을 기각했다.

(4)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분석

GPI는 자사 제품들이 고객 맞춤형으로 제조되어 잔탄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과거 판례⁷⁾에서 생산 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용했다.

상무부는 GPI 측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종 제품의 생산 원가·부가가치가 중국산 잔탄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이 변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GPI 제품 각각에서 잔탄검이 생산원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상세한 자료를 구했으며, 잔탄검 원가가 총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했다.⁸⁾

(5) 생산공정의 복잡성 비교 평가

상무부는 원료인 잔탄검이 세균 보존, 세균 접종, 여과/원심분리, 증류, 정수 처리, 건조, 제분 및 잠재적 피복 공정을 거치는 다단계 공정인 반면, GPI Purexan 80AN 및 200AN은 특정 단계(혼합 및 스프레이 분사)만을, GPI Quickxan 70은 3단계(비활성화→조건화→재활성화) 공정만을 거친다고 평가하며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GPI는 장기간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속 점도 분석기(Rapid Visco Analyzer)를 이용해 피복 처리된 잔탄검의 양을 검사하고 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으나, 상무부는 이를 오히려 GPI 공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근거로 해석했다. 특히 GPI가 강조한 ‘신속’·‘저렴’ 등의 특징은 검사가 집약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6) 투자 수준

상무부는 최종 제품과 원료 잔탄검 제품 간 투자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중립적 요소로 처리했다. 특히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해당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이해관계자인 GPI에 있다고 강조했다.

7)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Not Less Than Fair Value: Wax and Wax/Resin Thermal Transfer Ribb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69 FR 17645(April 5, 2004), Peer Bearing Company—Changshan v. United States, 128 F. Supp. 1286(CIT 2015)

8)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7) 필수 성분 및 본질적 특성 부여

GPI는 잔탄검이 자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료이지만, 이러한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Acetric Health LLC v. United States*, 949 F. 3d 719(Fed. Circ. 2020)⁹⁾와 같은 관련 판례들을 인용했다. GPI에 따르면, 자사의 최종 제품들은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GPI가 인용한 판례들이 주로 미국 CBP의 판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GPI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산지 판정 시 주로 19 CFR 134.1을 적용하는 CBP와 달리, 상무부는 별도의 규정인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무부는 CBP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상무부는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탄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GPI 자신이 자사 제품의 본질이 여전히 잔탄검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GPI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7개 판단 요소 전반을 종합한 결과 GPI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여전히 중국산 잔탄검에서 유래한다고 판단했다.

[GPI 잔탄검 범위판정 핵심 쟁점 및 상무부 판단]

구분	GPI의 주장	미국 상무부의 판단
제품 등급/종류	자사 제품은 특정 공정을 거쳐 여러 원료가 혼합된 가공품으로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및 용도를 가지며, 특정 HTSUS 코드(예: 제2106.90.9898호)로 분류되어야 함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기술된 화학적 구조(5당 다당류)에 해당하므로 등급/종류가 동일함. 캐나다 공정은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함. HS CODE(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 목적이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이므로 GPI의 주장은 영향 없음

9) *Acetric Health LLC v. United States*, 949 F. 3d 719(Fed. Circ. 2020);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64 F. 2d 778(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1982); *Gibson-Thomsen Co., Inc. v. United States*, 27 CCPA 267(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1940); *Cyber Power Systems, Inc. v. United States*, 622 F. Supp. 3d 1397(CIT 2023),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8(CIT 1987)).



구분	GPI의 주장	미국 상무부의 판단
물리적 특성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음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 제시 부족.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는 경미한 수준이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님. 명령 문언은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므로 물리적 특징 변화는 중요하지 않음
최종 용도	Purexan 80AN, 200AN, Quixxan 70은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개조된 제품이며 일반 잔탄검과 동일하지 않음 - 아울러 초기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해당 제품들은 동일 업종인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사용되며 잔탄검으로 표기되므로 최종 용도 측면에서 잔탄검과 다르지 않음. ITC 역시 최종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 상무부는 ITC 보고서에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ITC가 피해 보고서에서 관련 제품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으며, GPI 제품의 용도가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대상 제외 주장을 거부함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자사 제품은 고객 맞춤형으로 잔탄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무의미하며,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GPI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최종 제품의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가 중국산 잔탄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을 변형시키지 못함. GPI 제품의 총원가에서 잔탄검 원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생산 공정의 복잡성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잔탄검의 변형을 주장 - 최종 용도에 따라 배합됨	원료 잔탄검 생산은 세균 보존, 여과 등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반면, GPI 공정은 특정 단계(예: 3단계)만을 거치므로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더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
투자 수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	최종 제품과 원료 잔탄검 제품 간 투자 수준 비교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중립적 요소로 처리. 해당 주장 입증 책임은 GPI에 있음
본질적 특성 부여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 성질, 용도가 변형되어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판례를 인용	GPI가 인용한 판례는 주로 CBP 판정과 관련되며, 상무부는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함. 상무부는 CBP 등 타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탄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이 잔탄검임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강조함



5. 소결

미국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에서 자체 개발한 공정을 통해 중국산 잔탄검을 가공하였더라도, 그 공정이 기존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날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GPI의 공정이 독자 기술개발에 기반하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해당 공정은 명령문에 기재된 고려 사항이 아니므로 범위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상무부는 GPI가 혼합물 내 잔탄검 함량이 건조중량 기준 15%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명령문이 규정한 적용 기준(피복 여부와 관계없이 잔탄검 15% 이상 포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상무부는 GPI 제품이 중국산 잔탄검과 동일한 화학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상무부가 범위판정에서 공정의 독자성보다 명령문에 규정된 서면 기준과 화학적 동일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6. 맺음말

동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서면 설명은 범위 해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며, 특히 명령문이 제품의 핵심 성분이나 화학적·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서면 기준은 다른 부수적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범위판정을 준비하는 기업은 서면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의 논리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구성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상무부가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투자 규모, 생산공정의 특성, 원가 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충분한 증빙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특정 제품이 기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이전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작성한 미국 산업 피해 조사보고서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 ITC 조사자료와 서면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빙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범위판정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9 CFR §351.225 – Scope Rulings
- 19 CFR §351.301 – Time limits for submission of factual information.
- 19 CFR §351.303 – Filing, Document Identification, Format, Translation, Service,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 19 CFR §351.304 Establishing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of information.
- 19 CFR §351.305 Access to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 19 CFR §351.306 Us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Scope Ruling Application Guidance)
- 범위판정 신청서(Scope Ruling Application)
- ACCESS 전자 제출 절차 안내서(ACCESS Handbook On Electronic Filing Procedures (Updated Oct 30, 2023))
- Gum Products International, Inc., Scope Ruling Application for Food Ingredients, Case No. A-570-985, submitted to U.S. Department of Commerce (Sept. 19, 2023) (Public Version)
- U.S. Department of Commerce, "Xanthan G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on GPI Food Ingredients," Case A-570-985, Memorandum from Reginald Anadio to Scot Fullerton,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perations (May 20, 2025)
- ACCESS 홈페이지(<https://access.trade.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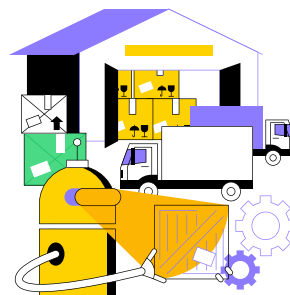
붙임1 : 미국 상무부 범위판정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정의	•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 범위판정은 (1)이해당사자(기업 등) 직접 신청 또는 (2) 상무부 우회조사 (circumvention inquiry, §351.226) 진행 중에도 병행/통합 검토 가능(§351.225(d)(2), (i)(1))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19 CFR 351.225 – (관련문서)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및 표준 신청서 공식 게재(홈페이지)
신청 방법	• (신청)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 ※ ACCESS 시스템(※ https://access.trade.gov/) ※ (예외) 500페이지 초과·50MB 초과 파일, ACCESS 장애 등 일부의 경우 직접 제출 가능 – 서류 불완전 및 번역 누락 시 신청서 반려(서류 보완 후 재제출 가능) • 언어 : 영어(번역문에는 원본 사본 반드시 첨부)
신청 절차	• 서류가 접수되면 상무부는 30일 내 검토 및 수리 → 사실관계 검토 → 120일 내 판정 발표 – 단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총 300일 이내에 최종판정¹⁰⁾ • (공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범위 내/외’ 결정 공표

10) §351.225(e)(2)

구분		주요 내용					
범위 판정 신청서 구성		• 5개 절 구성(제II~IV절 해당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요구됨) - 제II절 : 일반 정보(신청 개요, 첨부 문서 목록, 신청 목적 및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 제III절 : 제품 정보(공개 목적용 제품 정보 및 비공개 상세정보(생산이력, 생산량, 제조공정도 등), 마지막으로 해당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근거) - 제III절 : 원산지 정보(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IV절 : 제품 수입(미국 관세영역 반입 여부 등) - 제V절 :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신청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 및 관련 사실 기재)					
	최우선 고려사항	• (범위판정) 원칙적으로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서면 설명이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table><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tr><td>1차 자료</td><td> •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td></tr><tr><td>2차 자료</td><td> •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td></tr></table>	구분	주요 내용	1차 자료	•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2차 자료
구분	주요 내용						
1차 자료	•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2차 자료	•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범위 판단 기준	추가 고려 요건	• 서면 설명만으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이 명령의 "범위 내(in-scope)"인지 여부를 결정함: -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제품의 최종 용도 - 최종 사용자의 기대 - 거래 경로 - 제품이 광고 및 전시되는 방식 ※ 이 중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원산지	• (원산지) 범위판정 시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실질적 변형 분석(substantial transformation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음 (§351.225(j)). ☞ 상무부 AD/CVD 범위를 판단할 때 필요 시 19 CFR 351.225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이때 CBP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별개로 요건 및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 기준 · 최종 완제품이 원재료 제품과 다른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인지 여부 ·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 제3국에서의 가공 성격 및 복잡성 수준 ·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원산지 판단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할 수 있음					

TRADE & ORIGIN REPORT



국내 제조기업의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안내





국내 제조기업의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안내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



1. 인트로

2026년 1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본격 시행단계인 확정기간이 시작된다. 준비기간이었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엔 관세 부담 뿐만 아니라 검증, 수입 자격 취득 등 다방면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6년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지만, 2026년에 대한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약 1년 9개월의 준비 기간이 남아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EU CBAM 입법 일정, 확정기간 달라지는 점, 수출유형별 국내 제조기업의 확정기간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국내 제조기업이 확정기간 EU CBAM 대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 EU CBAM 입법 일정

2023년 EU CBAM 기본법인 ‘CBAM 규정(EU) 2023/956’과 ‘전환기간 이행규정’이 채택되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이 시행되었다. 당초 확정기간과 관련된 이행규정과 위임규정이 2025년에 순차적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2월 규제 간소화 및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인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되면서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기본법 ‘CBAM 규정(EU) 2025/2083’이 2025년 10월 채택되면서 관련 하위 규정의 채택이 2026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8개의 이행규정과 1개 위임규정을 관보게재하였다. 국내 기업은 배출량 산정 방법과 무상 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과 벤치마크와 관련된 ‘무상할당의 조정 이행규정’은 2025년 12월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에 기존 6개 품목 하위 다운스트림 으로의 확대 여부, 우회방지 조치 및 전력배출 규칙을 발표하였다.

구분	기 채택	개정 또는 신규 채택
규정	• (2023.5) 규정(EU) 2023/956	→ 〈개정〉 • (2025.10) 규정(EU) 2025/2083
이행 규정	• (2023.8) 이행규정(EU) 2023/1773 • (2024.12) CBAM 등록부 이행규정(EU) 2024/3210 • (2025.3) CBAM 신고인 승인 이행규정 (EU) 2025/486	→ 〈개정〉 • (2025.12) CBAM 등록부 이행규정(EU) 2025/2550 • (2025.12) CBAM 신고인 승인 이행규정(EU) 2025/2549 〈신규 채택〉 • (2025.10) 대륙붕과 EEZ 이행규정(EU) 2025/2210 • (2025.12)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EU) 2025/2547 • (2025.12) 검증인의 인정과 검증 원칙 이행규정(EU) 2025/2546 • (2025.12) CBAM 인증서의 가격 이행규정(EU) 2025/2548 • (2025.12) 세관당국의 수입에 대한 정보 전달 이행규정(EU) 2025/2619 • (2025.12) 무상할당의 조정 이행규정(EU) 2025/2620 • (2025.12) 기본값 이행규정(EU) 2025/2621



구분	기 채택	개정 또는 신규 채택
이행 규정		• (2026 상반기 예정) 기지불 탄소가격 이행규정 • (2026 상반기 예정) CBAM 신고서 이행규정
위임 규정	-	〈신규 채택〉 • (2025.11) 인정과 검증인의 조건 위임규정(EU) 2025/2997 • (2025.12 예정) CBAM 인증서의 구매와환매 조건 위임규정

3. 확정기간 달라지는 점

전환기간 대비 확정기간 달라지는 점을 아래 표에 비교하였다. 대상품목은 6개로 변화가 없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기존 품목 하위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를 발표할 계획이라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기간	2023.10.01. - 2025.12.31.	2026.01.01. -
대상 품목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CBAM 규정 부속서 I'에 대상 CN코드 제시)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가능성은 2025년 12월 채택 예정)
의무	산정 • 전환기간 EU CBAM 방법 • non EU 방법(- 2024년 12월) • 추정 방법(- 2025년 12월)	• 확정기간 EU CBAM 방법
	직·간접 배출 보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직접 배출 보고: 전기	직·간접 배출 보고: 비료, 시멘트 직접 배출 보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
	• 배출량: 실제값 또는 전환기간 기본값 (- 2024년 7월) • 분기별 CBAM 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배출량: 실제값 또는 확정기간 기본값 • 연 1회 CBAM 신고서를 차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
	검증	-
	인증서	-
		• 연 1회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 CBAM 인증서 제출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과징금	CBAM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에 대해 10~50 EUR/tCO₂e 부과	- 승인된 CBAM 신고인: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약 100 EUR/tCO₂e 부과. CBAM 인증서 별도 제출 - 승인되지 않은 수입업자: 50톤 초과 수입 시 약 300~500 EUR/tCO₂e 부과. 단, 55톤 이하 수입 시 단가 감경 가능. CBAM 인증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전환기간엔 4개의 의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보고 의무만 있었던 반면, 확정기간엔 산정, 보고, 검증,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의무의 주체는 CBAM 신고인(EU 역내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기업은 CBAM 신고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검증에 대한 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전환기간엔 별도의 자격 취득없이 CBAM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었으나, 확정기간엔 CBAM 등록부에서 승인 신청을 통해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CBAM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2025년 10월 CBAM 규정이 개정되어 연간 단일 중량 임계값(single mass-based threshold)인 50톤 이하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CBAM이 면제된다. 따라서 EU 역내에서 수입통관까지 담당하는 국내기업은 CBAM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 놓아야 한다. CBAM 규정 제17조제7a항에 따라 2026년 3월까지 승인 신청을 완료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CBAM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다.

확정기간 CBAM 신고인의 첫 번째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전환기간엔 non EU방법, 추정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었지만, 확정기간엔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따른 산정방법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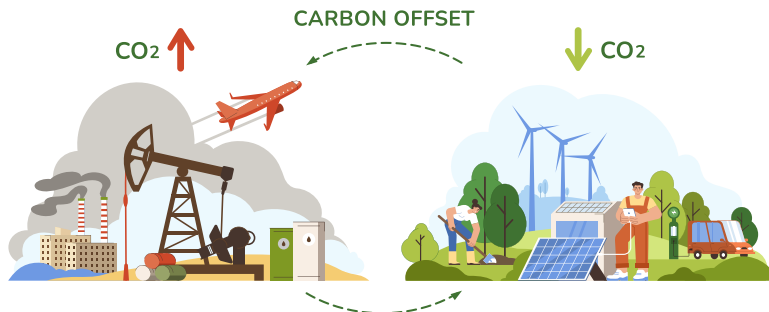


산정범위가 달라졌는데, 확정기간엔 비료와 시멘트만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산정·보고하고,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에 대해서는 직접 배출량만 산정·보고한다. 한편, CBAM 규정 개정에 따라 CBAM 대상 시스템 경계가 EU ETS에 포함되는 범위와 정합성을 이루도록 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두 번째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이다. 확정기간엔 실제값과 확정기간 기본값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연단위로 CBAM 등록부를 통해 차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기본값 사용 시 마크업이 적용되어 실제값 대비 CBAM 인증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실제값을 사용하는 것이 국내 수출기업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검증 의무이다. 실제값으로 보고할 때만 검증이 필요하며, 기본값 사용 시 검증은 면제된다. 전환기간엔 단순 보고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할 시 자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확정기간엔 실제값에 따라 CBAM 인증서 수량이 결정되므로 검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EU 국가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으로부터 연 1회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은 CBAM 등록부를 통해 검증보고서를 직접 제출한다.

네 번째, CBAM 신고인은 산정된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2027년 2월부터 EU ETS 종가의 주간 평균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2026년에 대한 CBAM 인증서는 예외적으로 EU ETS 종가의 분기별 평균가격으로 구매·제출한다.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계산 시 제3국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인정받아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3국 사업자가 직접 산정해 제3자로부터 인증받아야 했으나, CBAM 규정 개정으로 직접 산정한 기지불 탄소가격 또는 EU 집행위가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할 국가·CN코드별 기본 탄소가격(default carbon price)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간에 승인된 CBAM 신고인이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 100유로/tCO₂e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CBAM 인증서는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이보다 3-5배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EU 역내 수입까지 담당하는 국내 기업은 임계값 초과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정확한 CBAM 인증서 수량을 제출해 과징금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4. 수출유형별 국내 제조기업의 확정기간 대응 방법

CBAM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은 다음 표와 같이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1 기업은 국내 수출 뿐만 아니라 EU 역내 수입 통관도 담당하는 기업, 유형 2 기업은 국내 수출만 담당하는 기업, 그리고 유형 3 기업은 EU로 간접 수출하는 기업이다. 유형 1과 유형 2 기업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해 수출하는 무역업 기업과 직접 제조하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하 본문은 제조기업에 초점을 맞춰 확정기간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분		유형 1. 국내 수출 + EU 수입 통관 기업	유형 2. 국내 수출 기업	유형 3. EU 간접 수출 기업
정의		국내 수출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을 통해 EU 역내 수입까지 담당하는 기업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CBAM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관련 전구물질 또는 CBAM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업 무	직접 생산	O or X	O or X	O
	수출신고	O	O	X
	수입신고	O	X	X

〈유형 1 제조기업〉

연간 단일 중량 임계값(50톤)을 초과해 EU 역내로 수입하는 유형 1 제조기업은 우선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CBAM 상품을 수입하는 보고 연도(N년)에는 국내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전구물질 제조업체로부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 정보를 확보하고, 자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량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U에서는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분기별 예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BAM 신고서를 제출하는 연도(N+1년)에는 국내에서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해 CBAM Operator 포털에 입력하고, EU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EU에서는 CBAM Operator 포털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CBAM 신고인 포털에서 CBAM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CBAM 인증서와 함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형 2 제조기업〉

유형 2 제조기업은 우선 EU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의 EU 수입 CN코드와 수입업자의 연간 CBAM 상품 수입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사 수출품이 CBAM 대상에 해당한다면 유형 1 제조기업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즉, N년에는 전구물질 정보 확보 및 자사 내 연·원료 투입량, 생산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차년도(N+1년)에는 CBAM 신고인에게 사업장과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정보 제공 시 CBAM Operator 포털뿐만 아니라 communication template 등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다.

〈유형 3 제조기업〉

유형 3 제조기업은 자사 제품을 구매한 국내 혹은 해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정기간에 실제값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CBAM 인증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유형 3 제조기업은 자사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수준과 검증 비용을 평가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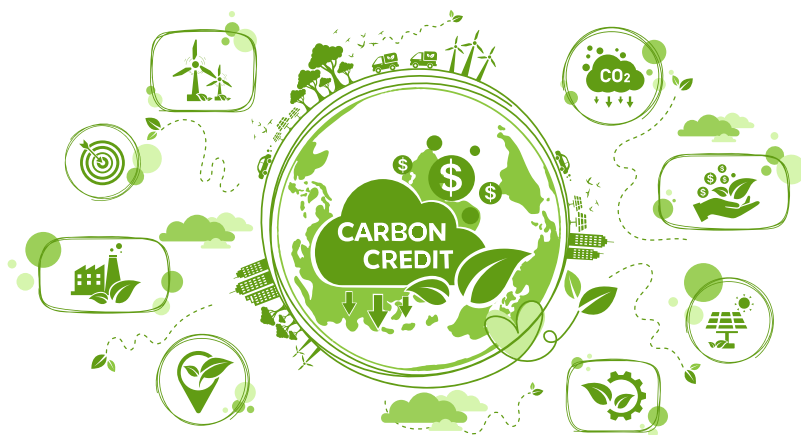
확정기간 EU 내에서 EU ETS 무상할당이 감소함에 따라 EU ETS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곧 CBAM 인증서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CBAM 벤치마크 및 CBAM 계수가 단계적으로 감소하면서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역시 증가하게 된다. 즉, 확정기간 CBAM 인증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제조기업은 CBAM 상품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CBAM 대응에 있어 실제값 사용이 유리한 만큼,

기업 내부의 MRV 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기업 간 배출량 정보 교환과 같은 협력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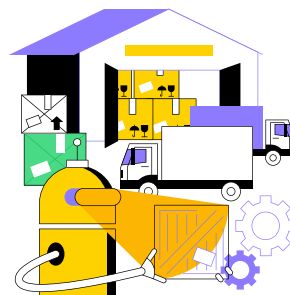
5. 결론

CBAM의 본격 시행은 국내 제조기업의 MRV 체계와 공급망 관리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전환기간에는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확정기간에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인증서 제출까지 전 과정이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특히 실제값에 기반한 보고가 CBAM 인증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업장 내 MRV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구물질 제조업체 및 판매처와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단위의 대응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축소와 CBAM 벤치마크·CBAM 계수의 지속적 감소는 향후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비용과 수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비용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을 의미하며, 생산 공정의 효율 개선,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구조적 감축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EU CBAM 뿐만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에코디자인의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탄소·환경 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은 이러한 변화된 글로벌 환경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유형별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EU CBAM 확정기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TRADE & ORIGIN REPORT



미국 CBP 결정사례로 본 품목분류사전심사 (Advance Ruling)의 중요성





미국 CBP 결정사례로 본 품목분류사전심사 (Advance Ruling)의 중요성



김성채
PwC 관세법인 HS 연구원장

1. 미국 CBP의 HS 품목분류 심사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HS 협약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제3조의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대부분의 WTO 및 WCO 회원국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기타 법적 결정을 내린다.

- 사전심사는 국제 무역 커뮤니티에 CBP가 향후의 수입 또는 운송거래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 예를 들어 결정서(ruling letter)는 상품의 관세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관세 등 모든 비용 부과, 반입의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정서를 통하여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 수입시 어떻게 취급될지는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CBP는 그밖에도 현재 진행중인 수입 및 운송거래에 대한 내부조언(internal advice)이나 CBP의 결정건에 대한 항소 검토(protest review)에 따른 기존사례 변경 등의 법적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CBP는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라 불리는 이미 결정된 사전심사 데이터에 대한 검색시스템, 공고, 연방통지, CBP 지침 및 핸드북 등 다양한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cbp.gov/trade/ruling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시행된 여러 무역정책, 특히 상호관세 및 수입조정 조치들은 국제무역질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갑작스럽게 부과된 높은 관세 자체도 문제이지만 수출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예측불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S 품목분류를 포함한 사전심사제도는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보탬이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미국 CBP의 품목분류 ruling 상이사례를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업종의 향후 대미 수출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최근의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과 미국 CBP의 HS Ruling

HS 품목분류표의 중요한 요건 또는 성격을 뜻하는 표현 중 하나로 일물일호(一物一號)의 원칙¹⁾이 있다. 하나의 물품은 한 개의 품목번호에만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품에 따라서는 HS 품목분류의 어느 두 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물품들이 쉽고 명료하게 동일한 하나의 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부나 류의 주, 예를 들어 각 부나 류 주의 제외규정, 제84류 주 제2호, 제17부 주 제4호, 제97류 주 제5호 등), 제2호 및 제3호 등이다.

1) 보통 일물일처(一物一處)라는 표현을 더 흔하게 사용하나 HS 품목분류에 맞도록 변형한 문헌(오수교, 『FTA·관세·무역실무자 및 수험생을 위한 관세율표』, 세인북스, 2013, p15)상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도구(품목분류표)를 근거로 분류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나 품목분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외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결과와 미국 CBP의 견해가 다른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빙로봇과 배달로봇

2023년 9월, 제72차 WCO(세계관세기구) HS 위원회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2가지 종류의 로봇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HS 위원회에서 논의된 물품은 아래와 같다.

① 실내용 서빙 로봇 	•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신하여 홀 서빙을 해주는 로봇으로 vision 센서와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모터구동식 바퀴가 달린 베이스에 3~4단의 음식 트레이와 터치작동식의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어 있음(중량 50kg, 이동속도 0.8 m/s) • 주방에서부터 요리사가 음식을 트레이에 얹어두면 본 기기는 손님이 있는 식탁까지 중간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해가면서 이송식당 내에서 이동하면서 식당이나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외사용은 부적합함.
② 실외용 배달 로봇 	• 근거리 실외 배달서비스용 로봇으로 카페, 식당, 편의점에서 음식이나 음료의 배달을 위해 사용. 목적지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주행하거나 리모콘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있음. (적재량 15kg, 최대 이동속도 12km/h) • 주행중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등으로 이동하면서 장애물 등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음.

HS 위원회 논의과정이나 쟁점은 다소 복잡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HS 위원회는 이 두 가지 물품을 모두 제8428.90호(적하·양하용의 기계)에 분류하였고, 시장에서 통상 '로봇'으로 불리는 다양한 기계와 관련한 미래의 HS 품목분류표 개정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 CBP는 이들 물품이 HS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중 유사한 물품들에 대하여 HS 결정과는 달리 서빙로봇은 제8479호(기타의 기계류)에, 배달로봇은 제8704호(화물 자동차)에 각각 분류하였다.

결정번호	N335128 (23.9.18)	HQ H329911(23.6.7)
분류결과	8479.89.9599	8704.60.00
제목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erving robot from South Korea	Classification of Meal and Product Delivery Robots
내용	The subject product is the H***** S1 Robot, which you describe as an autonomous traveling serving robot. It is comprised of two sections: a lower driving module and an upper application module. The driving module includes the controller, motor, battery, and 2D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sensor. (중략) We note that the subject robot is designed and programmed to function solely in a non-industrial, food service environment. (생략)	The subject merchandise consists of meal and product delivery robots from Colombia known as “Kiwi*****.” You state that the robots are “aimed at universities, cities, and companies in general,” and that they “circulate safely along the sidewalks to deliver meals and products through customers using an API. (중략) You request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classify the subject robots under heading 8709, HTSUS, which provides for “Works trucks, self-propelled, not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중략) We find that the subject robots squarely meet the terms of heading 8704, HTSUS, as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First, the robots are “motor vehicles” in that each robot incorporates electric hub motors to self-propel (i.e., the robots are motorized) and can carry goods (i.e., the robots are vehicles) by road (even if only “occasionally”). Second, the robots are designed to transport goods in a plastic container for delivery to customers. (생략)

HS 위원회는 미국의 Ruling 이후 이들 물품을 모두 제8428.90호에 분류하였고, 2024.6월 WCO 총회에서 이 품목들에 대한 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²⁾ 등재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미국 CBP는 현재까지 자국의 Ruling에 대한 별도의 재검토나 변경(Revocation)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2)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는 HS 협약 제7조에 따라 협약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HS 품목분류표를 보조하는 분류지침서의 하나로 WCO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조간행물의 하나이다. HS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는 회원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대부분 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되고 이는 특정물품에 대한 WC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권고이자 통일적인 품목분류 기준으로 제공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의 HS 분류체계로 보자면 미국의 품목분류 결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글쓰이는 생각한다. 다만, HS 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총회의 승인까지 얻은 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책임있는 HS 협약 회원국의 자세일 것이다.

미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TSUS)상으로 제8428.90호는 관세 0%가 적용되는 반면, 제8479.89.9599호와 제8704.60.00호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³⁾.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물품에 대한 새로운 Ruling을 신청하거나 HS 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한 기존 Ruling의 재검토 요청 등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floor mat)

앞서 일물일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언급한 바 있다.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호의 용어가 가장 구체적(most specific)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통칙 제3호 해설서는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more clearly identifies)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identification is less complete)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라고 해설하면서 자동차용의 바닥깔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위 해설과 관련, 우리나라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깔개를 재질에 따라 제3926호(기타의 플라스틱 제품)로 분류하고 있다.

3) 미국의 상호관세나 품목별 수입조정과는 무관한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2025 Rev. 30(2025년 11월) 상의 Rates of Duty 1(General)에 명시된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글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세율은 HTSUS 상의 관세율을 의미한다.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38(2024.7.12)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AR MAT B(PE FLAT TYPE HOOK ATTACHED CARMAT) PE-F-HK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노출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 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섬유로 보강), 중간은 입체감을 주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편물이 적층된 특정형상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보조매트 • 용도 :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바닥 인테리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바닥에 추가로 놓고 사용하는 보조 매트로 제87류 차량의 기능과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 바닥 깔개는 재질에 따라 방직용섬유로 만든 것은 제57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91호등으로 분류하므로, 바닥 깔개의 특성(두꺼움, 단단함, 강도)을 갖춘 본건 물품도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생략)



본 결정사유에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통칙 제3호 해설서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결 기구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은 그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글쓴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결정은 통칙 제3호 가목 해석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바닥 깔개의 경우 재질에 따라 경합하는 호가 달라지며 각 호의 용어마다 그 구체성이 다르다. 즉, 재질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용 바닥 깔개가 통칙 제3호 가목 해설서의 예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자동차 바닥 깔개'의 경우 제5703호와 제8708호가 경합할 것인데 제5703호의 용어(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터프트(tuft)한 것])가 제8708호의 용어(제8701호부터 제8705호 차량용의 부속품)보다 대상물품을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차량용 부속품은 종류(class) 또는 카테고리(category)를 함의하는 표현인 반면, 양탄자나 바닥 깔개는 비교적 특정한 품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바닥 깔개'나 '가황고무제의 자동차 바닥 깔개'의 경우 이들



물품을 두고 제8708호와 경합한 만한 호인 제3926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와 제4016호(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의 용어가 제8708호의 용어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8708호의 '자동차의 부속품(accessory)'이라는 표현이 제3926호나 제4016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제품(article)'이라는 표현보다 명백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판단된다.

굳이 따지자면 'accessory'나 'article' 모두 특정의 품명보다 종류 또는 카테고리를 함의하는 표현이겠으나 HS 품목분류표에서 'accessory'는 통상 부속품만을 의미하지만, 'article'은 품목분류표상 거의 모든 물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용 바닥깔개의 경우 그 재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접근의 품목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⁴⁾.

구분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터프트한(tufted)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경합세번	제3926호 vs 제8708호	제4016호 vs 제8708호	제5703호 vs 제8708호
품목분류	제8708호	제4016호	제5703호
분류근거	통칙 제3호 가목 (협약의 표현)	통칙 제1호 (제17부 주 제1호의 제외규정)	통칙 제3호 가목 (협약의 표현)

우리나라 분류 견해와 달리 미국 CBP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깔개를 제8708호(자동차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해 오고 있다.

참조번호	NY N345998 (25.3.12)	NY N307817(19.12.6)
결정세번	8708.29.5160	8708.99.8180
제목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automotive floor mat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vehicle floor mats from China
물품설명	The article under consideration is a set of four polyvinyl chloride (PVC) automobile floor mats (Part Number JD888YY-BE1-3P-2#ML), which is designed to fit the contours of an automobile's interior floor surface.	The item under considera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4Count Vehicle Floor Mat Set. You state in your request that the 4 CountVehicle Floor Mat Set sells as one unit containing four mats; two for the

4) 이 접근방식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타 HS 회원국에서 이와 같은 공식적인 Ruling 사례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물품설명	The mats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for the front and rear floor areas.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mats is to protect the car's flooring from dirt, moisture, and wear. They are also intended to enhance the overall interior appearance of vehicles.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set of four PVC automobile floor mats will be 8708.29.516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Other: Other: Other." The general rate of duty will be 2.5% ad valorem. (생략)	rear floor board and two for the front floor board of a vehicle. The mats are constructed of PVC vinyl. (중략) The applicable subheading of the 4CountVehicle Floor Mat Set (SKU # 24227501) will be 8708.99.8180, (중략) 

CBP의 Ruling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바닥깔개를 일관되게 제8708호에 분류하고 있다. 다만, 6단위 소호 레벨에서 제8708.29호(차체의 기타 부분품)로 분류한 것과 제8708.99호(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모두 존재함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 HTSUS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제 자동차 바닥깔개를 제8708.29.5160호(관세 2.5%)나 제8708.99.8180호(관세 2.5%)에 분류하는 것이 제3926.90호(관세 5.3%)에 비해 유리할 수는 있다. 다만,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의 품목관세가 문제(수입조정대상 여부인지의 문제)인데, 미국의 수입조정 조치와 관련된 최근의 포고문(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Proclamation 10908, '25.3.26'⁵⁾)상으로는 HTSUS 제8708.29.51호는 수입조정 대상인 반면, HTSUS 제8708.99.81호의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5) 이 포고문은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HTSUS 코드 기준 147개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조정 조치를 담고 있다. 지난 10월의 한미 무역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 품목관세가 상호관세와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품목분류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향후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차원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자동차용의 전자제어유닛(ECU, Electronic Control Unit)

ECU는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연료공급계통 등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장비로 자동차용 컴퓨터라고도 불린다. 현 시대의 자동차에는 차량의 모든 운행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많은 센서가 달려있으며 ECU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와 연관된 각종 액추에이터를 제어함으로써 성능 및 연비 최적화, 안전 시스템 제어, 진단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CU의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자동차 주행시 엔진의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조절하여 최적의 출력과 연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동차에는 하나의 ECU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ECU가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며 이들은 그 특화된 기능에 따라 엔진 제어 ECU(Engine Control Unit), 변속기 제어 ECU(Transmission Control Unit), 파워트레인 제어 모듈(Powertrain Control Unit)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또는 어떤 용도로 특화된 것이든 관계없이 이 계열의 물품은 자동차의 특정한 주행요건을 개선 및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그 측정값에 따라 원하는 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CU는 현재에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되는 분야로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는 품목분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CU 품목분류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물품을 비전기적인 양을 제어하기 위한 자동조절용 기기(제9032호)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ECU 계열의 물품을 제9032호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0('13.4.29)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물품설명	자동차 차량의 각 부분에 장치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변속레버의 위치, ATF의 온도, 가속페달의 밟힘 정도, 외부도로 경사도, 운전자의 운전성향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 이를 제어 연산처리장치에서 처리하여 변속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변속을 수행·제어하기 위해 관련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함 (중략)
결정사유	• 관세율표제9032호의 용어에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정기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중략)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회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정사유

- 또한제9032호에 분류될 수 있는 자동조절기는 (A) 측정장치, (B) 전기식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됨을 설명.
-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 “(2) 전기식조절장치도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각 부분 센서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입력받아 자동으로 유압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제어하여 적절한 변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함 (생략)

ECU 계열의 물품에 대하여 CBP는 2007년 이전에는 대체로 제9032호(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제8537호(전기제어용·보드·패널)로 분류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HTSUS상으로 제8537호에는 관세 2.7%, 제9032.89호에는 관세 1.7%가 각각 적용된다.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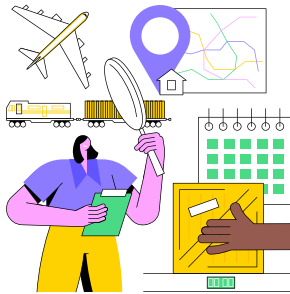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인 올해 들어서만도 알루미늄, 철강, 구리제품 및 그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입조정 조치로 해당 제품군의 관세율이 수시로 변동되어왔다.

한미 무역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수출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가 25%에서 15%로 경감되어 상호관세율과 동일해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CBP의 품목분류 결정이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각종 보호무역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단기적인 무역환경 변화나 국제 역학관계에 따라 개별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언제든지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CBP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관세정책 방향에 동의하는지와는 별개로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입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HS 변경에는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선 미래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HS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CBP의 사전심사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RADE & ORIGIN REPORT



1. EU CBAM 관리시스템 보급 예정

- EU CBAM 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및
개발 기능 소개 -

2.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 성공 사례





EU CBAM 관리시스템 보급 예정

- EU CBAM 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및 개발 기능 소개 -



CBAM PASS



박성만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운영팀장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2023.10.1.~2025.12.31.)을 거친 후, 2026.1.1.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본격 시행한다.

EU의 CBAM은 타국(연합)의 제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나 EU CBAM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물품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EU CBAM 규정 탄소배출량 관리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활용이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보급을 통해 EU CBAM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하는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한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내에 EU CBAM

관리기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TA 원산지 관리와 EU CBAM 탄소배출량 관리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함으로써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U CBAM 관리시스템은 EU CBAM 대상 물품을 생산·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활용 절차는 EU CBAM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설계하였으며, 관리 정보는 EU CBAM 탄소배출량의 계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입력 수준으로 고려하였다. 보고서 형식은 기업의 환경과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화면, Excel, XML 3종의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EU CBAM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탄소배출량 관리 절차는 1단계 자료 입력, 2단계 탄소배출량 산정, 3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로 업무를 수행한다.

[EU CBAM 관리시스템 활용 절차]



먼저, 1단계 자료입력 단계는 기준정보와 활동데이터를 입력한다. 기준정보는 변경이나 신규 발생이 빈번하지 않은 정보로 사업장, 시설, 제품(제품, 전구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데이터는 전기 사용량, 전구물질 투입규모, 제품 생산량 등으로 구성된다.

2단계 탄소배출량 산정은 EU CBAM 대상 물품을 선택한 후 1단계에서 입력한 기준정보와 활동데이터를 근거로 물품의 톤당 탄소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3단계에서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한 물품에 대해 EU CBAM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고서 양식인 Communication Template을 기준으로 웹 화면, Excel, XML 형식의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EU CBAM 관리시스템 활용 예시 화면

▶ 1단계(기준정보) : 전구물질 관리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CBAM-PASS'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기준 정보' (Basic Information), '활동 데이터 관리' (Activity Data Management), '탄소 배출량' (Carbon Emissions), '서류 관리' (Document Management), '운영 이력' (Operation History), '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ment), and '도움말' (Help).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1단계(기준정보) : 전구물질 관리화면'. It features a search bar and a table listing precursors. The table has columns for '제품명' (Product Name), 'precursor-001', 'kg', and 'kg'. The listed items are '1_태백특수강_한국', '2_북경특수강_중국', and '3_도쿄특수강_일본'. Each item has buttons for '상세보기' (View Details), '수정' (Edit), and '삭제' (Delete). The bottom of the page shows pagination information: '보기 1 - 3 / 3' and '페이지 1 / 1'.

기준정보는 사업장과 제품(전구물질 포함)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 사업장의 시설에 투입되는지를 연결한다. 활동데이터인 전력 사용량, 전구물질 투입량, 제품 생산량 등은 사업장 단위로 배분되어 계산하기 때문에 시설과 사업장의 연결(매핑)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1단계(활동데이터) : 전구물질 등 투입규모

The screenshot shows the 'CBAM-PASS'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s the same as in the previous screensho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1단계(활동데이터) : 전구물질 등 투입규모'. It features a table with columns for '배출원' (Emission Source), '연료' (Fuel), '단위' (Unit), and monthly input data from January to June, along with a total. The table data is as follows:

배출원	연료	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2024 연료사용 한전 전력	한전(한국전력공사)	kWh	376,360,000	342,024,000	377,690,000	332,453,000	343,623,000	328,	4,122,017,000
1_태백특수강_한국	1_태백특수강_한국	kg	30,550,000	28,912,000	41,522,000	34,112,000	32,318,000	29,	390,000,000
2_북경특수강_중국	2_북경특수강_중국	kg	57,692,500	54,599,200	78,412,700	64,419,200	61,031,300	55,	736,500,000
3_도쿄특수강_일본	3_도쿄특수강_일본	kg	29,257,500	27,688,800	39,765,300	32,668,800	30,950,700	28,	373,500,000

The bottom of the page shows pagination information: '페이지 1 / 1' and '합계'.



월 단위로 사업장 시설에 투입된 정보를 입력한다. 전력의 경우 월 단위의 전력 사용량을 kWh 단위로, 전구물질의 경우 해당 월에 제품생산에 투입된 양을 Kg 단위로 입력한다. 입력은 각 셀에 한건 한건 입력할 수 있으며, 제공된 엑셀 양식에 일정기간의 자료를 기재한 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2단계(탄소배출량 계산) : 탄소배출량 계산 및 결과 요약

기존 정보
활동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서류 관리
운영 이력
시스템 관리
도움말

신규 제품

제품	CN CODE	수량	입력 단위	입력 배치	액션
스테인리스 와이어	7223 00	1	t	2	수정 삭제

요약

시설 배출

CBAM 커뮤니케이션 정보

내재배출량

제품	배출 소스	SE (직접)	SEE (직접)	SE (간접)	SEE (간접)	SEE (합)	EMBEM (직접)	EMBEM (간접)	EMBEM (합)	생산량
스테인리스 와이어	Wire of stainless steel, in co...	0.000	1.565	1.255	2.454	4.019	263.679	413.494	677.173	168,500

스테인리스 와이어 상세

보기 1 - 0 / 0

페이지 1 / 1

공게/비공게

Select...

파일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EU CBAM 신고 대상 제품을 선택하여 등록한 후 탄소배출량을 계산한다. 탄소배출량은 기준정보의 사업장, 제품(전구물질 포함)과 활동데이터의 전력 사용량, 전구물질 투입량 제품 생산량 등을 근거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 3단계(보고서 작성) : Excel 형식 보고서

보고서 제공 형식은 웹 화면, Excel, XML 형식으로 제공하므로, 기업에서 보고서 활용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EU에서는 보고서 양식으로 엑셀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수입업체에서 요구하는 CBAM 보고서 입력사항을 모두 전달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행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이미 제출된 CBAM 보고서는 보고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시정할 수 있고, 수정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현행화하여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EU CBAM 관리시스템 구축·보급을 통해 EU로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대상 물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를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 EU CBAM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재정에 도움이 되며,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제품별 탄소배출량 계산과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이 자동화되어 정확한 정보의 입력만으로도 EU CBAM 탄소배출량 관리 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영국은 2027.01.0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EU와 달리 전환기간 없이 바로 시행예정이며, 미국도 수입품과 미국 내 생산품 모두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는 2010년 미국, 인도, 아세안, EU와 체결한 4개 FTA의 원산지관리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 22개 FTA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금번 구축된 EU CBAM 관리시스템으로 향후 EU 외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과 업무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 성공 사례

FTA PASS



한지윤
에선테크 구매파트 차장

1. 들어가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함께 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복잡한 증명 요건은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출 이후에도 수입국 세관의 사후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FTA-PASS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효율화를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입 서류의 전산화, 협력업체 관리,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PA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FTA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FTA-PASS를 도입·활용하며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기반 원산지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효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FTA-PASS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및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2. 본론

예선테크는 디스플레이, 자동차/2차전지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점착소재부품(HS 3919.90)’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을 연계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다.

기능성 점착소재와 필름류는 거의 모든 제조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예선테크는 TV·스마트기기·자동차 모듈 등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소재를 가공하여 완제품 및 중간재 형태로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등이며, 이들 국가로의 공급 과정은 원자재 수입(매입)-가공-수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통상 구조를 갖는다.

FTA 협정 확대에 따라 원산지 기준에 맞춘 특혜관세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으나, 예선테크의 기존 원산지관리 방식은 수작업 기반의 엑셀 관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협력사별 원산지 확인서 관리, BOM(원자재 명세), FTA 적용 기준 검토 등의 모두 수동으로 처리되다 보니, 서류 누락을 포함한 오입력에 따른 위험과 담당자별 업무 편차 및 자료의 일관성 부족 등이 지속 발생하였다.

특히 다품종 제품을 5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RVC, CTH, CTS, MC 등)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로 인해 판정오류 발생과 C/O 발급 지연 및 C/O 미적용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과 비용 부담 사례도 발생하였다. 더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C/O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FTA-PASS를 도입하여 기존 ERP 및 AEO 시스템과 연동하는 통합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 원산지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FTA-PASS 도입 및 활용 과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수작업 중심의 원산지 관리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예선테크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C/O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다품종·다국적 수출 구조 특성상, 협정별 기준이 상이한 원산지 판정과 서류의 무결성을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지속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선테크는 FTA-PASS 도입을 통한 전사적·시스템 기반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FTA-PASS 구축 초기에는 가정 먼저 ERP와의 데이터 연동 구조 설계가 핵심과제로 설정되었다. 예선테크는 구매-생산-수출 프로세스를 FTA-PASS와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BOM 구조 내 각 원자재의 HS코드, BOM, 원산지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데이터 흐름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바른관세사무소)와 협업해 원산지 정합성 점검, HS코드 재분류등을 협업하였고,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 및 갱신되도록 개선하였다.

시스템 구축 이후 사내 사용자 교육과 운영 정착이 필수적이었다. 예선테크는 한국원산지 정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판정/법령/절차등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였으며, 초기에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입력 오류나 누락사례가 있었으나, 부서별 담당자 지정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화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FTA-PASS를 중심으로 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가 자리 잡게 되면서 수입-가공-수출 전 과정의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되는 통합 관리체계가 완성되었다. 그 결과, 각 품목의 원산지 판정 정보와 C/O 발급 이력, 협력사 서류 등이 서로 연계되어 수출입 전 구간의 추적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예선테크의 FTA-PASS 도입에 따른 원산지관리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2) FTA-PASS 도입의 전후 성과(효과)

FTA-PASS 기반의 통합 원산지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예선테크는 도입 이전과 비교해 정확성·효율성·전략성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수입-가공-수출 구간의 데이터를 FTA-PASS를 통해 관리하면서 원산지정보의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는 재무적 실익과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① C/O 발급 효율성 향상 및 행정비용 절감

C/O 발급 프로세스가 체계화되면서, C/O 발급 소요시간이 건당 평균 1시간 이상 단축되었다. 반복작성이 필요한 서류 또한 PASS 내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면서 인력 소요가 크게 감소했고 수출증가시에도 안정적으로 발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운영 체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② FTA 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실질적 비용 절감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신뢰도 높은 C/O 발급으로, 예선테크는 매년 5억원 이상의 관세 실익을 확보하였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협정별 기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큰 성과로 FTA-PASS 도입이 관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③ FTA 활용 수출액 증가

- 2016년 FTA원산지증명 수출액 107,469 USD에서 2020년 11,344,555 USD(106배 증가)



- 현재 1,000만 불 규모의 안정적인 FTA 활용 수출 실적을 유지

④ 협력업체 원산지 서류 관리 수준의 획기적 개선

FTA-PASS를 도입하면서 과거 빈번했던 국내 협력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 미제출, 지연 제출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고, 서류 누락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C/O 발급 시 오류나 미발행에 따른 고객 클레임도 대폭 감소하였다.

⑤ FTA-PASS와 AEO 연계를 통한 리스크 감소 및 인증 등급 상향

AEO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출입, 원산지, 통관 리스크를 통합 관리한 결과, 데이터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2024년 AEO 재공인에서 동종업계 최초로 AA등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업체별인증)지위 까지 획득하는 기반이 되었다.

⑥ 협정별 최적 FTA 대한 선택 활용이 가능한 전략적 통상 체계 구축

FTA-PASS 도입 이후 예선테크에서는 단순히 C/O 발급하는 수준을 넘어, 수출 품목에 대한 대상국가 조건에 따른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예시)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한-인니 CEPA와 한-ASEAN FTA 등을 비교하여 최유리 협정을 선택 적용하는 실무 전략 활용 중

⑦ 한국-인도네시아 생산거점을 연계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FTA-PASS 기반의 원산지 관리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예선테크는 단순한 관세절감 수준을 넘어, 글로벌 생산기지를 연계한 FTA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참고 : 경기 FTA통상진흥센터의 지원으로 정기 컨설팅(연1회 씩 3차례), 원산지 검증 모의점검, FTA활용 교육 지원]

이에 대한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은 한국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법인(INY)으로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가적인 원자재를 결합하여 가공한 후 해당 완제품을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다.



3. 결론 (향후 계획)

예선테크는 이러한 원산지 관리 혁신과 FTA 활용 성과를 인정받아 제62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회사가 FTA 기반의 경쟁력 강화, 원산지 무결성 확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해온 노력이 실제 성과로 입증된 결과라 할수 있다.

예선테크는 앞으로도 FTA-PASS를 단순한 원산지증명 관리 도구가 아닌,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2026년까지 SI기반의 데이터 검증 및 자동 분류 기능까지 도입하여, 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산지 검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수출입 전 과정을 통합한 One-PASS(통합 원산지·AEO·FTA 관리 플랫폼)로 발전시키기 위한 G-ERP 연계도 추진 중이다.

FTA-PASS는 단순한 C/O 발급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뒷받침하고 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파트너로서 그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예선테크는 FTA-PASS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FTA-PASS 미활용 기업들에게도 실무형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의 FTA 활용률 제고와 무역 리스크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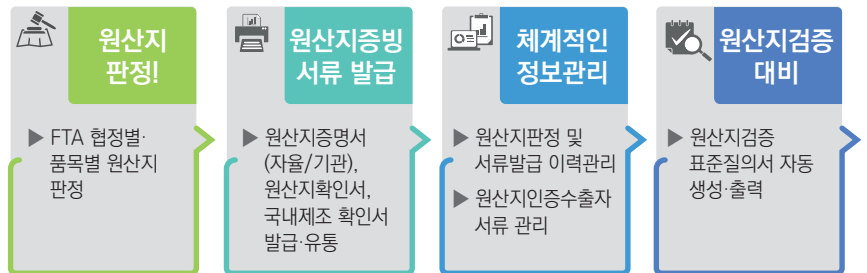
■ 시스템 개요

중견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2. FTA-PASS 주요기능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수출 (재고관리기능 사용)	· 재고관리기법(일출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비를 산출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불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 13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수출/국내공급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국내공급 (영세기업)	·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 운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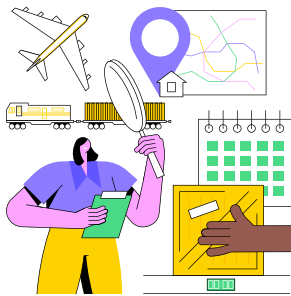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17: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



TRADE & ORIGIN REPORT



K-바이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다





K-바이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다



송대진
셀트리온 관세사



인터뷰어(Interviewer)
구지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K-바이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역량, 첨단 제조 기술, 품질 신뢰도까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K-바이오는 단순한 의약품 생산을 넘어,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플랫폼과 글로벌 수준의 임상·제조 역량, 그리고 환자 중심의 치료 접근 방식이라는 독자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EU를 비롯한 주요 시장의 규제 변화, 인증 요건 강화, 그리고 국가 간 통상 환경 변화는 K-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을 생산·수출하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 바이오 시장 속에서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K-바이오가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귀사의 주요 수출 품목과 시장 진출 현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셀트리온(이하 “당사”)은 2002년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신산업을 개척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용어는 바이오(bio)와 시밀러(similar)의 합성어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임상적으로 동일한 효능과 안정성을 가진 복제약을 뜻합니다. 당사는 2013년 최초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에 대해 유럽 의약품 식약청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7년 트룩 시마, 2018년 허쥬마에 대해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 총 11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획득한 후 전세계 110여개 주요 국가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Q 귀사에서의 대표 물품 수출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당사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공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 특허를 받은 보세공장에 해당합니다. 송도 공장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추가 가공을 위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최종 생산이 완료된 완제의약품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매출의 95%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로,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해외에서 들여온 미디어, 레진 등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으로 들여와 세관에 사용 신고¹⁾를 합니다.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관세법상 외국인 보세공장에서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을 생산한 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별도 세금 납부 없이 제조, 가공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 작성 사항, 해외 수입자와의 대금결제 사항 등은 일반 수출과 동일하나, 수출신고 과정에서 보세공장수출이라는 별도 코드를 통해 수출신고를

1) 사용 신고란, 보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보세공장 특허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한 절차를 의미함



진행하고 있으며, 보세물품의 반출입 사항은 모두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따라 외국 원재료 반입 시 과세 보류라는 세금 혜택이 있는 한편, 관세법상 외국인 지역에서 제조가공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세관 통제 및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귀사에서 수출하고 있는 제품(군)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은 생산 효율성, 원가 절감, 발빠른 임상, 글로벌 품목허가 및 유통망 확보 등에서 결정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임상, 생산, 허가에 대해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세계 약 40여개 해외법인/영업사무소를 통해 유통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기준 제약, 바이오 기업 R&D 투자 현황에서 당사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신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개발 뿐 아니라, 한국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first

mover로써 최초로 신산업을 개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 개발 도전이라는 미래지향적 방향도,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의약품은 국가별 규제 기준이 매우 상이한데, 귀사에서는 주요 수출국의 규제·허가 또는 의약품 원료 수입 시 규제 요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경험하신 규제 변화나 대응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당사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 FDA, 유럽 EMA 등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를 득하며, 100여개국에서 제품 시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이오의약품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환경 변화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생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세 인상, FDA의 해외 제조시설 불시 실사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와 같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가 상승, 승인 지연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미국 FDA 규제 대응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반면, 유럽 EMA는 최근 바이오시밀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이며, 임상 3상 생략 등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당사 개발비 절감과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 허가부서는 미국 FDA, EMA와 같은 각국 규제기관의 오리지널 제품과의 동등성/동질성 입증 요구, 정기 실사를 통한 cGMP(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신규 적응증²⁾(예: 류마티스 관절염) 추가를 위한 별도 임상 3상 진행 요구 등 여러가지 규제·절차를 신속히 파악하고,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여러 파이프라인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Q 바이오 의약품 특성상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생산·품질 관리가 중요한데, 귀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물류 흐름 차원에서, 당사는 관세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AA기업³⁾으로서, AEO 관리 기준을 회사 SCM에 내재화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송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공급망 내 모든 업체가 AEO 업체인 경우 서류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공급망 내 일부 업체가 AEO 업체인 경우 GP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화물 추적을 수행하며, 공급망 내 AEO 업체가 없는 경우 실사를 통해 안정성 평가 후 운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AEO와 관련이 없는 일부 Risk high(공급망 내 국내외 파트너사인 포워더, 관세사, 창고 등 모든 업체가 AEO 인증이 없는 운송 구간의 최초 운송건, 신규국가 운송 등)구간에 대해서만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혹여

- 2) 기존 승인된 의약품이 새로운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허가 내용(허가 사항)을 의미함.
- 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를 뜻하며, 공인 등급에 따라 A·AA·AAA로 분류됨.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집중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해외 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 전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면, 본 공급망 관리 체계를 활용해 문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통상 관세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가 의약품 수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A 미국 트럼프 정부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수입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11월 기준 한국산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철강, 자동차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 별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약품은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아직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25년 4월 1일 의약품에 대해서도 무역조사를 시작한 만큼(최장 370여 일 이내 조사결과 결정)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언급한 바도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미국 수입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당사는 일정 기간 사용 예정 물량에 해당하는 재고를 관세

부과 이전에 미국으로 선 수출함으로써,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 유통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인수하여 미국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통 구조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부과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원료의약품을 미국 직접 생산을 통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적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의 강력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끝으로, 급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나 유관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A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각종 세미나, 배포자료 등 정보를 제공받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개별적 창구가 아닌, 기업 실무자와 정부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부입장에서도 기업의 애로사항일 직접 청취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미국 관세 부과정책 뿐 아니라 수출입 통관 상의 이슈, 무역 애로사항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창구 마련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인터뷰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K-바이오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임상·제조·규제 대응·공급망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EU 등 주요 시장의 규제 강화, 관세 정책 변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도, 셀트리온은 적극적인 현지 생산기지 확보, AEO 기반의 공급망 관리 체계, 전략적 재고 운용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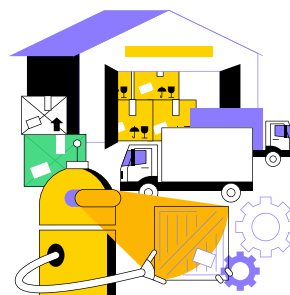
현재,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통상정책 변화는 향후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책적 지원, 신속한 정보 제공, 기업과의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K-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신 셀트리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RADE & ORIGIN REPORT



중국 수출입 교역과 우리나라 對중 수출 품목 동향

■ 분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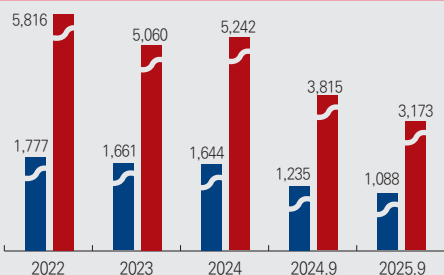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자 거대한 내수시장으로서 한국의 핵심 교역 상대국임
- 중국의 내수진작·공급망 자국화(재편)·산업정책(첨단산업 육성 등)과 미·중 지정학적 긴장 등은 품목별 수요 구조와 국내 수출의 경쟁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전부터 2025년 9월(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의 최근 수출입 교역 현황과 국가별·품목별 對중 수출 현황을 분석하여, 중국 정책·공급망 변화가 실제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포그래픽으로써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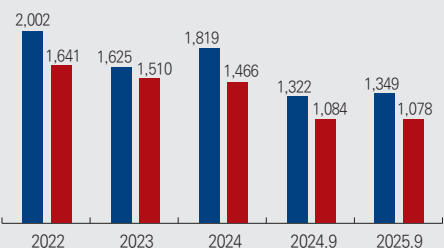


중국의 교역 상위 10대국 현황 (2025년 9월 총교역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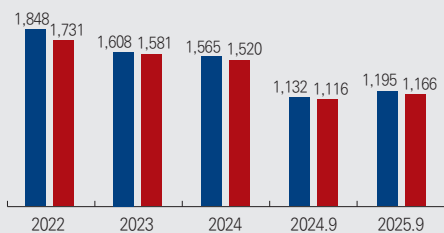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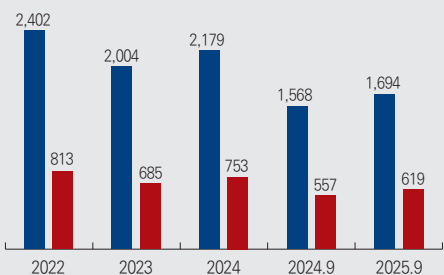
2.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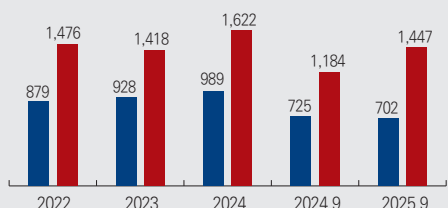
3. 일본



4.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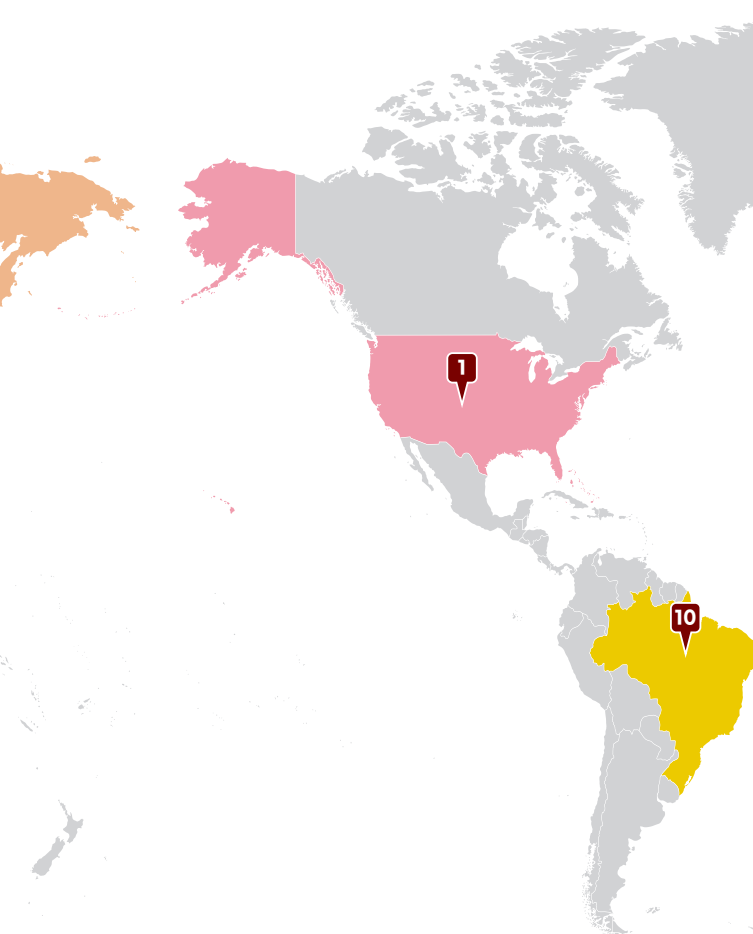
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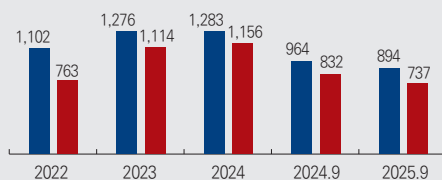
수입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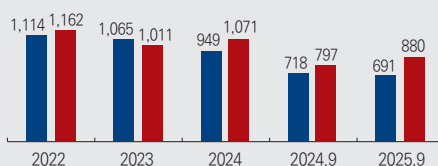
(단위 : 억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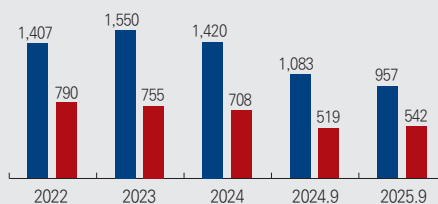
6.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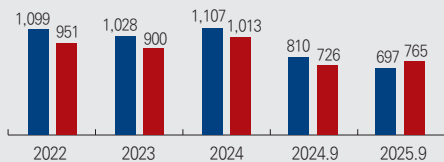
7.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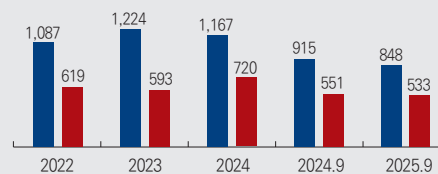
8. 호주



9. 말레이시아



10.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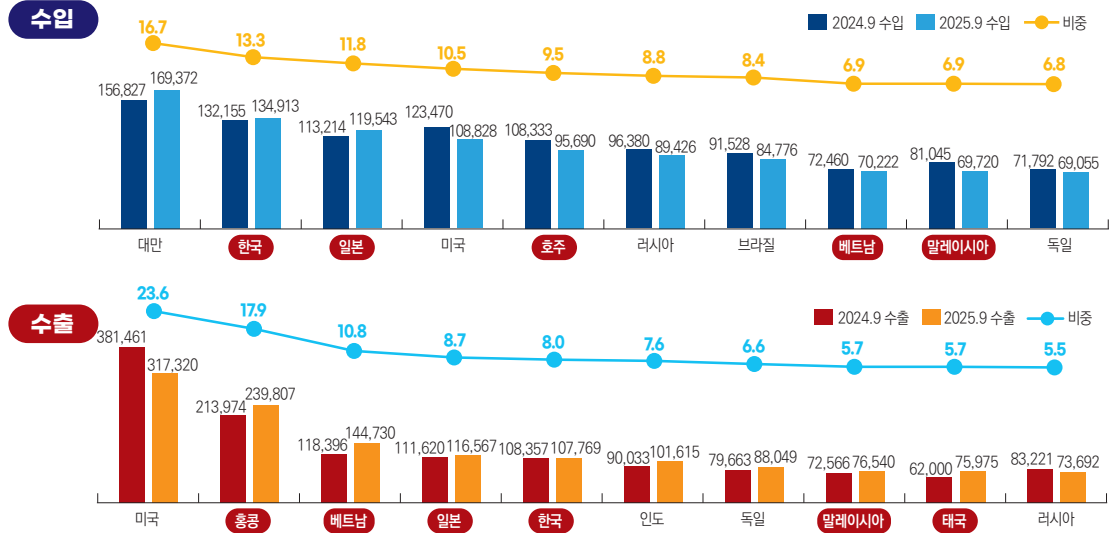




1. 중국의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중국 상위 10개국 수출입 현황

* 중국 FTA 체결국 빨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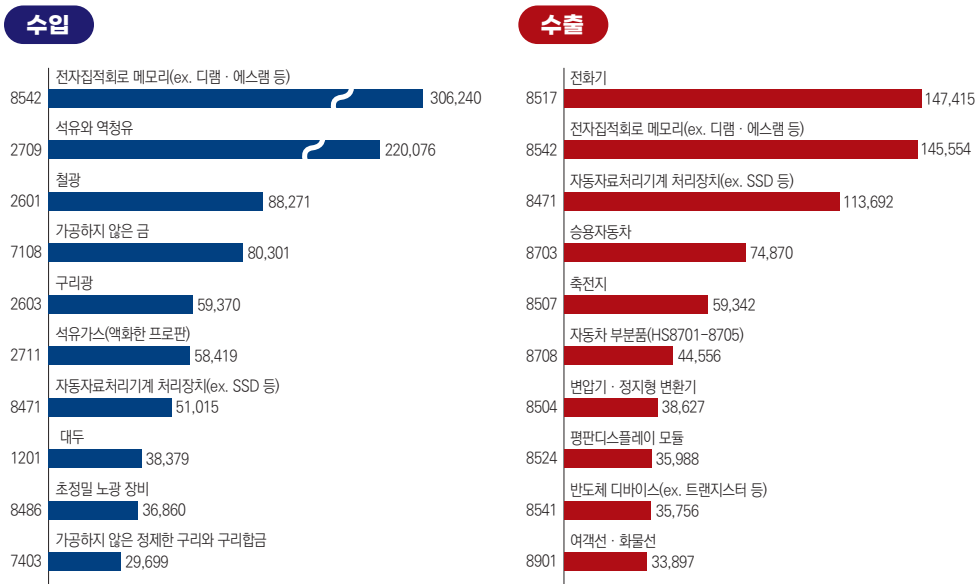


자료 : K-stat, 10개국 이하 생략하여 작성

2. HS 4단위 기준 중국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현황

중국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5.9 기준)

단위 : 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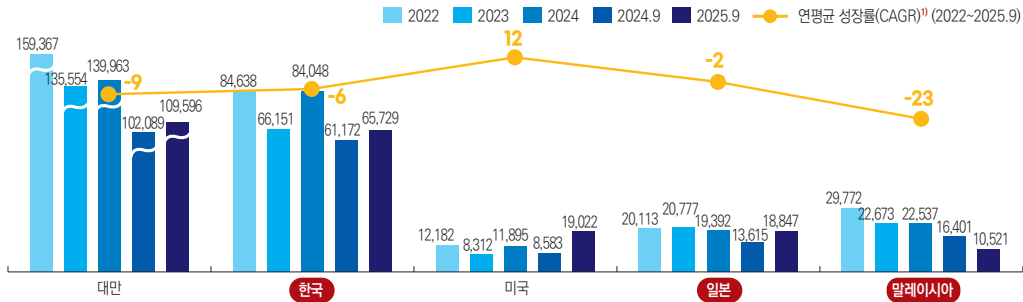


자료 : K-stat

3-1. 중국 수입 상위 3개 품목 대상 국가 5개국(5개년 수입)

1. HS 8542[전자집적회로 메모리(ex. 디램·에스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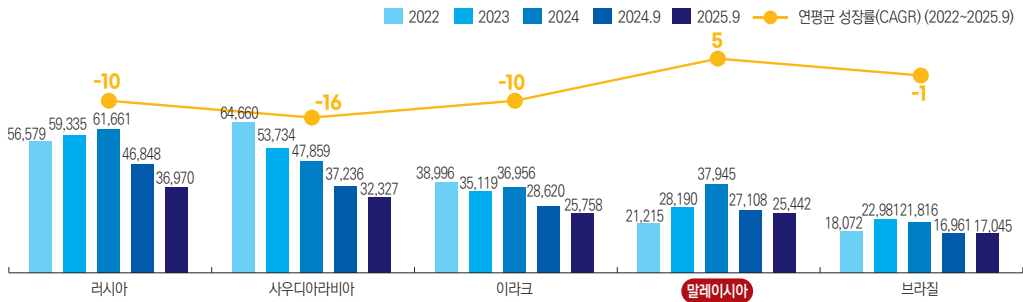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stat

2. HS 2709(석유와 역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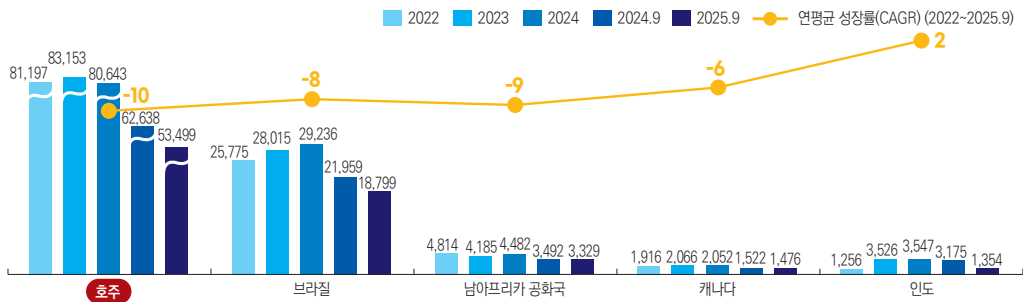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stat

3. HS 2601(철광)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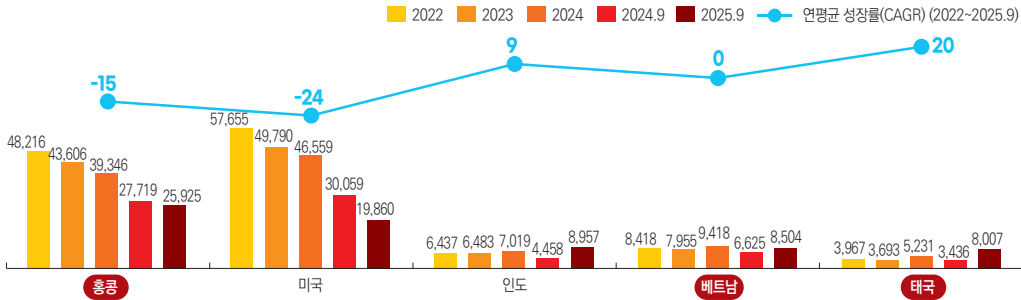
1) 연평균성장률(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3-2. 중국 수출 상위 3개 품목 대상 국가 5개국(5개년 수출)

1. HS 8517[(전화기 등 스마트폰 (ex. 무선 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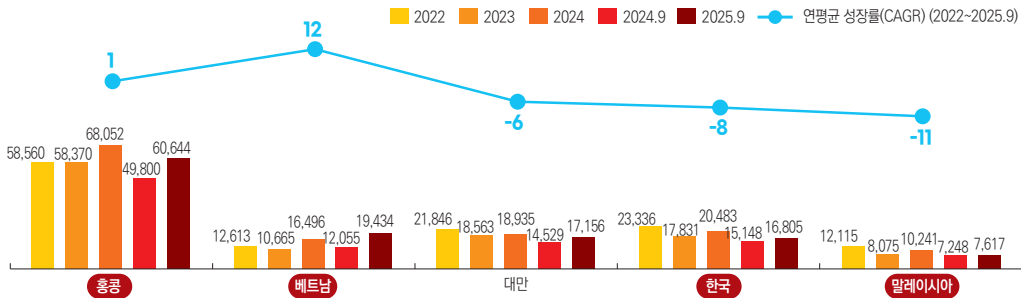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stat

2. HS 8542[전자집적회로 메모리(ex. 디램·에스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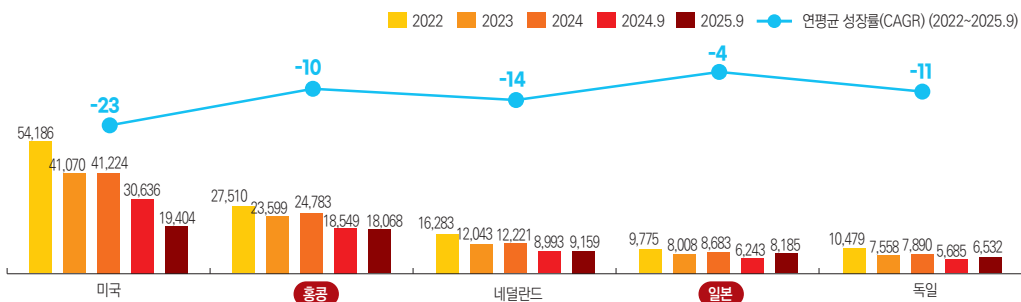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stat

3. HS 8471[자동자료처리기계 처리장치(ex. SSD 등)]

* 중국 FTA 체결국 발강색으로 표시, 단위 : 백만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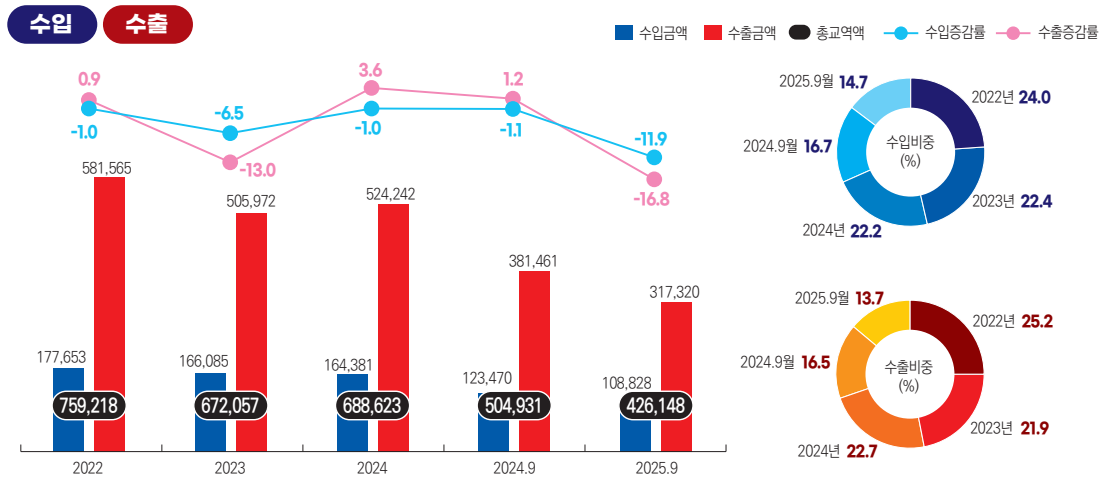
자료 : K-stat

4. 중국의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1) 중국-미국

중국-미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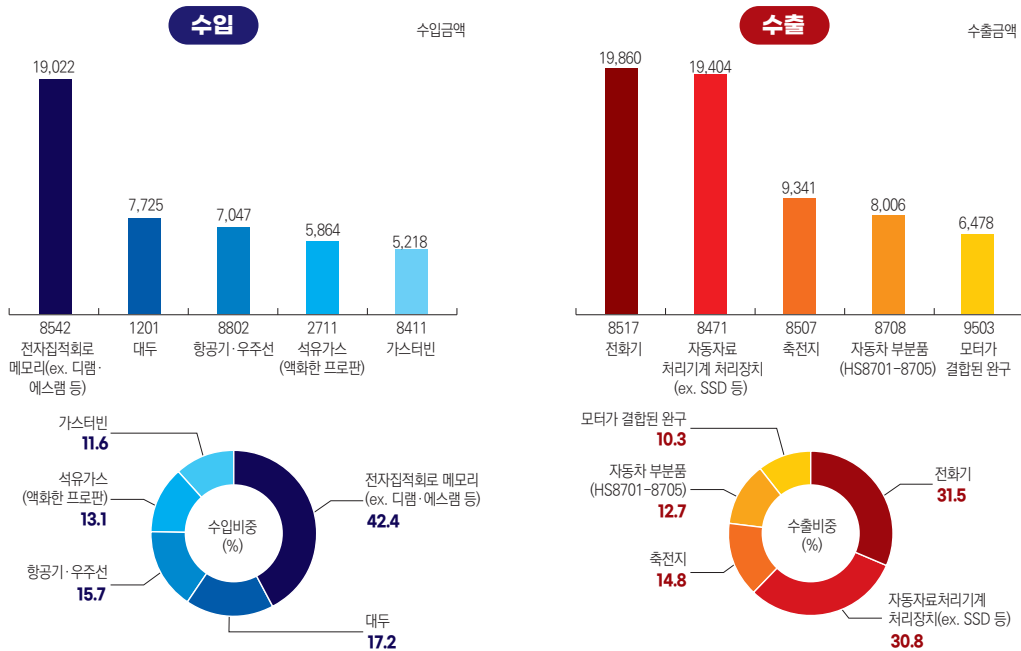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ITA

중국-미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5년 9월 기준)

단위 : 백만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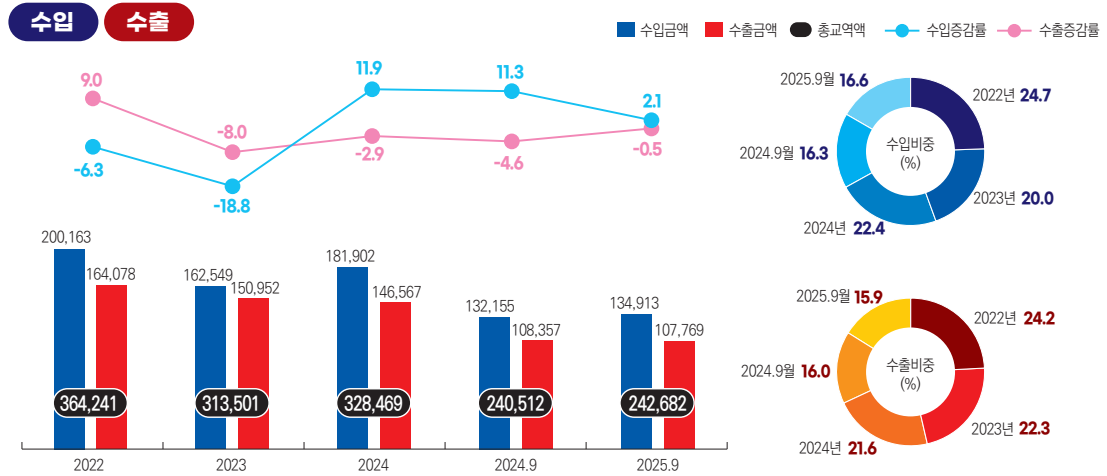
자료 : K-stat



2) 중국-한국

중국-한국의 최근 5년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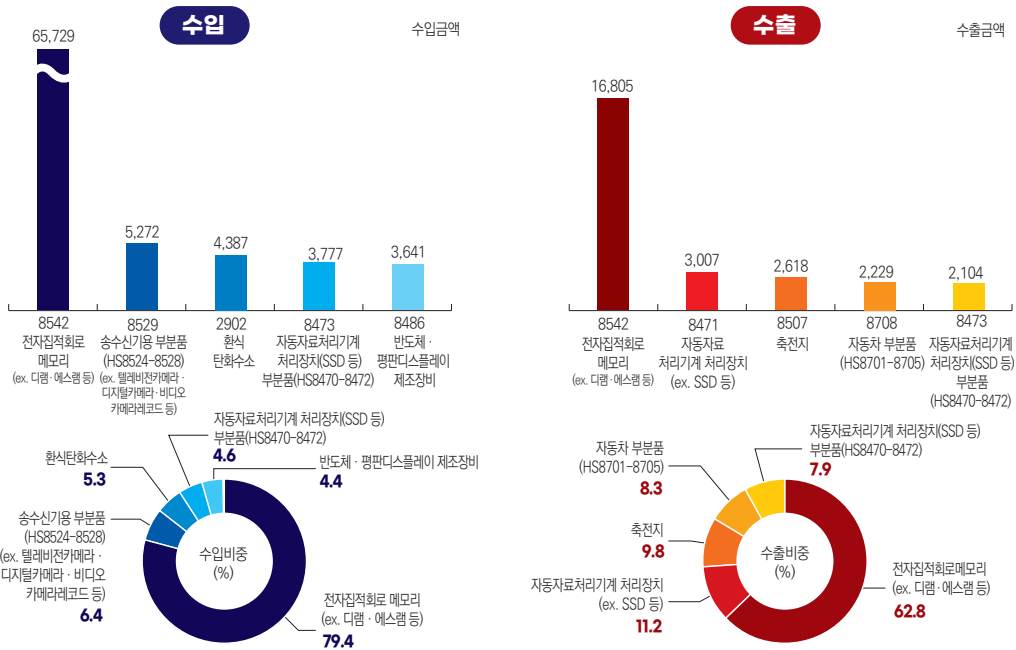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ITA

중국-한국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5년 9월 기준)

단위 : 백만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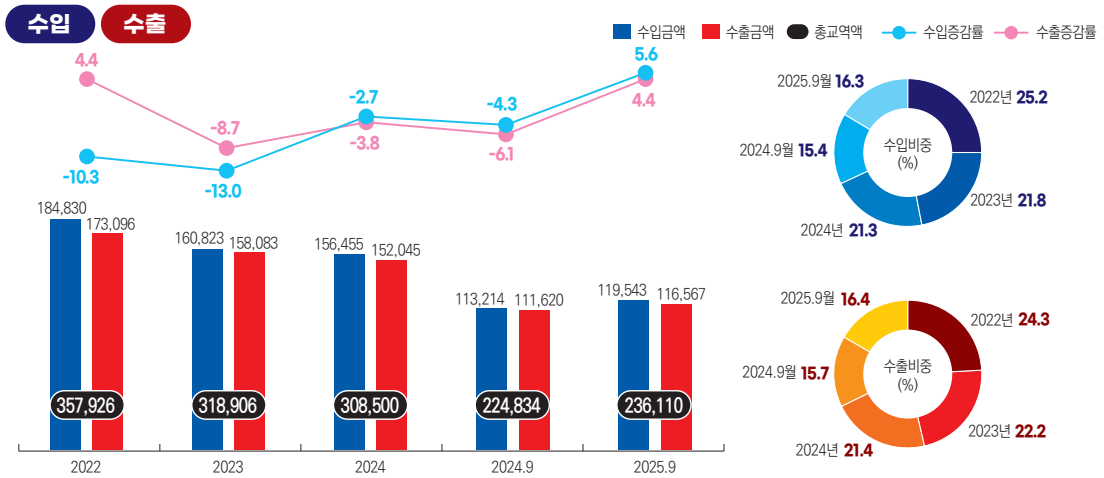


자료 : K-stat

3) 중국-일본

중국-일본의 최근 5년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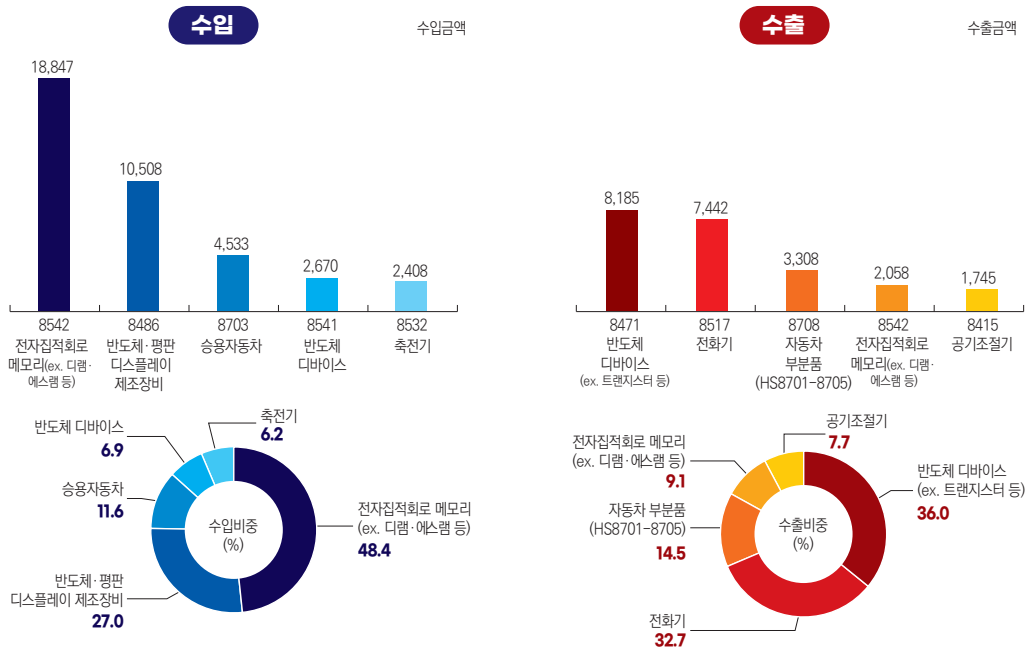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불, %



자료 : KITA

중국-일본의 교역 상위 5대품목(2025년 9월 기준)

단위 : 백만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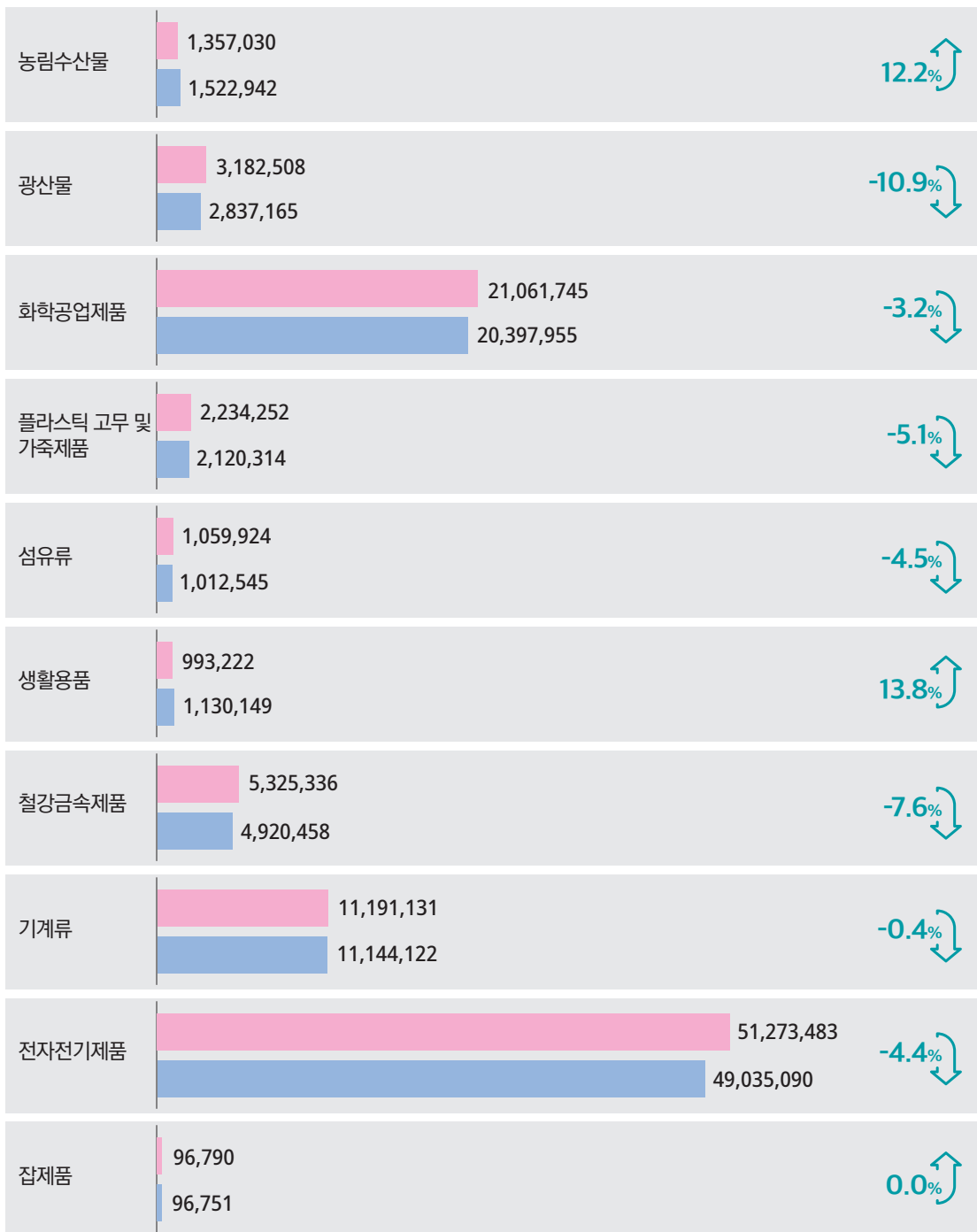
자료 : K-stat



5. 우리나라 산업별(MTI 1단위 기준) 대중 수출 현황

■ 우리나라 산업별(MTI 1단위 기준) 수출 현황 (2024년 3분기 vs 2025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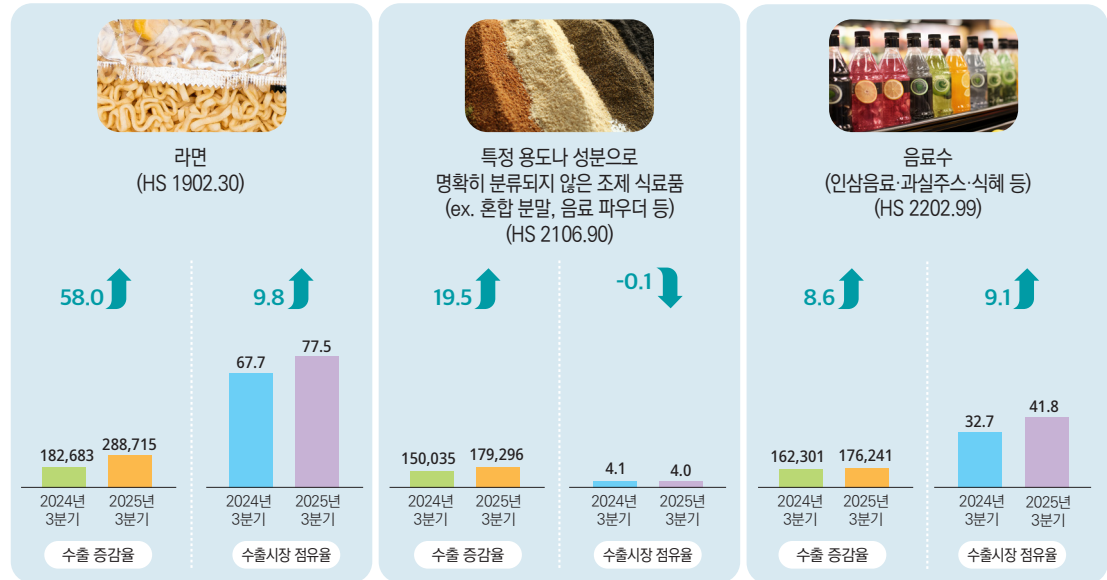
(단위: 천 불, %) ■ 2024.9 ■ 2025.9 ■ 증감률



■ 우리나라 산업별(MTI 1단위 기준) 대중시장 수출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증감율 & 점유율 변화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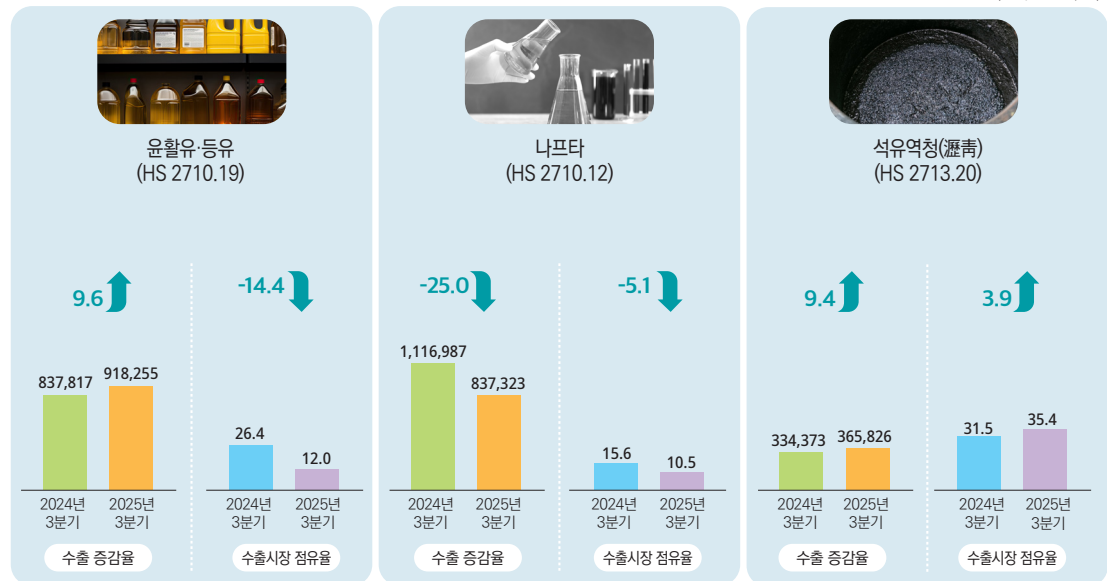
1. 농림수산물	2024.9	1,357,030	12.2% ↑
	2025.9	1,522,942	

(단위: 천 불, %)



2. 광산물	2024.9	3,182,508	-10.9% ↓
	2025.9	2,837,165	

(단위: 천 불, %)



2) 관세청 수출입통계상 수출 증감율은 관세청 수출입신고자료를, 시장 점유율은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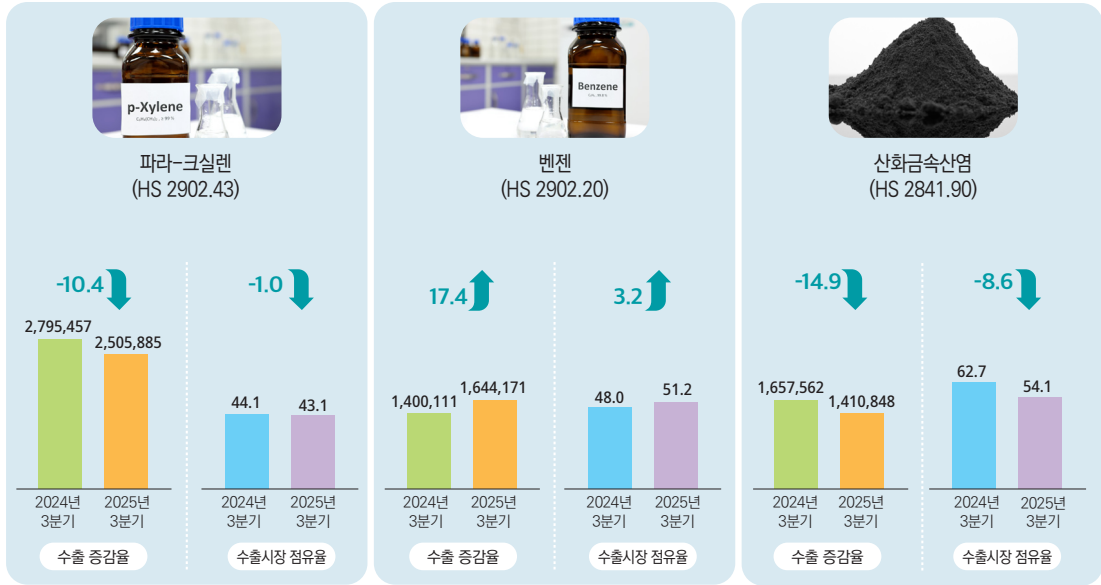


3. 화학공업제품

2024.9	21,061,745
2025.9	20,397,955

-3.2% ↓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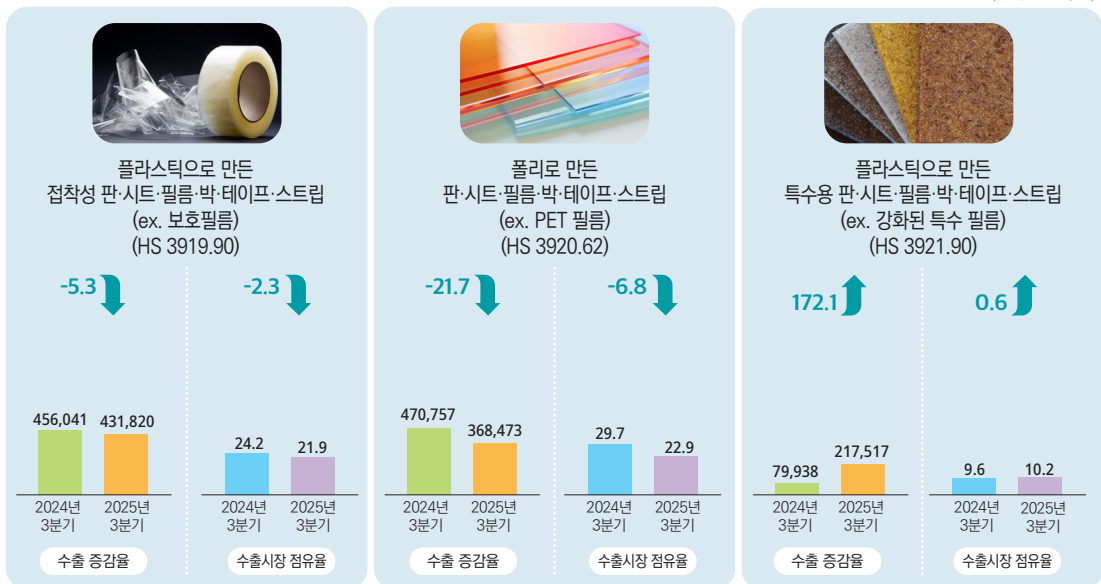


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024.9	2,234,252
2025.9	2,120,314

-5.1% ↓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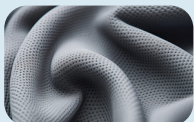


5. 섬유류

2024.9 1,059,924
2025.9 1,012,545

-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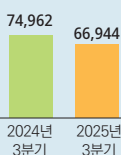
(단위 : 천 불,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플라스틱 피복직물
(HS 5903.20)

-10.7% ↓

-0.9% ↓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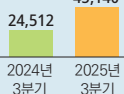
수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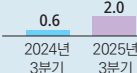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
(HS 6109.90)

84.2% ↑

1.4% ↑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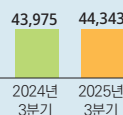
수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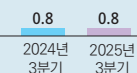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 슈트·바지
(HS 6204.69)

0.8% ↑

0.0% ↑



수출 증감률



수출시장 점유율

6. 생활용품

2024.9 993,222
2025.9 1,130,149

1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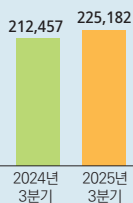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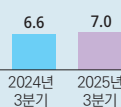
기계용 부품품
(HS 3926.90)

6% ↑

0.4% ↑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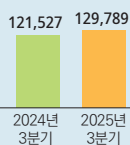
수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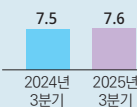
의자
(HS 9401.99)

6.8% ↑

0.1% ↑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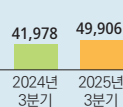
수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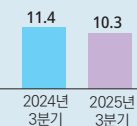
조제 계면활성제·세제·청정제
(HS 3402.90)

18.9% ↑

-1.1% ↓



수출 증감률



수출시장 점유율



7. 철강금속제품

2024.9	5,325,336
2025.9	4,920,458

-7.6% ↓

(단위 : 천 불, %)



정제한 구리
(HS 7403.11)

2.2 ↑

0.5 ↑

682,708 697,974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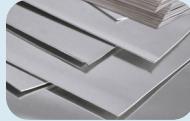
수출 증감율

2.7

3.2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시장 점유율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판·시트·스트립
(HS 7606.12)

-20.4 ↓

-2.7 ↓

501,370

399,170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 증감율

60.8

58.1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시장 점유율



철강으로 만든 기타 제품
(ex. 방직기계용 보빈 등)
(HS 7326.90)

4.2 ↑

0.1 ↑

353,724 368,628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 증감율

7.6

7.7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시장 점유율

8. 기계류

2024.9	11,191,131
2025.9	11,144,122

-0.4% ↓

(단위 : 천 불, %)



측정 검사용 기기
(ex. 광학식 표면 테스터, 윤곽투영기 등)
(HS 9031.49)

-7.9 ↓

-0.2 ↓

1,211,766 1,115,494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 증감율

9.4

9.2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시장 점유율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
(HS 8486.90)

19.6 ↑

1.2 ↑

881,236

1,053,879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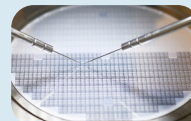
수출 증감율

22.4

23.6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시장 점유율



초정밀 노광장비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그리기 위한 장비)
(HS 8486.20)

-18.2 ↓

0.1 ↑

1,099,942

900,206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 증감율

4.6

4.7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수출시장 점유율

9.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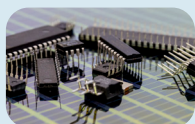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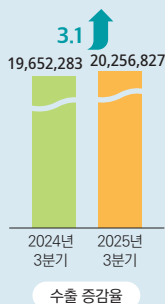
2024.9	51,273,483
2025.9	49,035,090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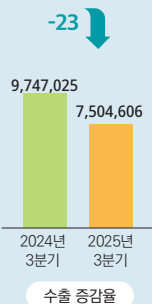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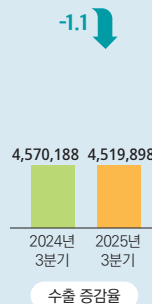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ex. 디램·에스램 등)
(HS 8542.32)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전자집적회로)
(HS 8542.31)



송수신기용
(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드 등) 부분품
(HS 8529.90)



10.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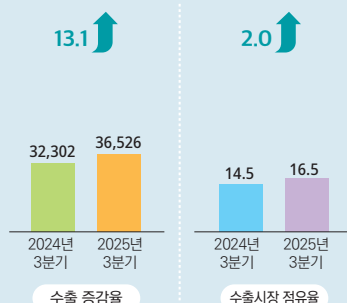
2024.9	96,790
2025.9	96,751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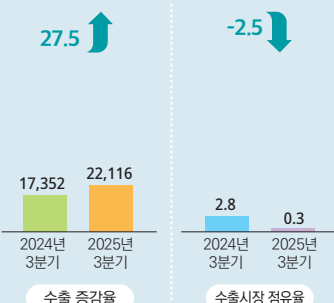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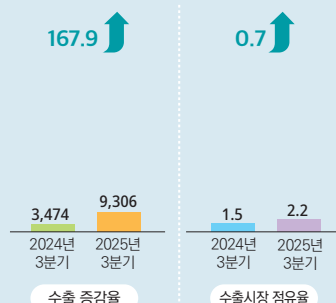
책 형태로 인쇄한 서적
(HS 4901.99)



카탈로그류 서적
(HS 4901.10)



서화·디자인·사진
(HS 4911.91)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경제국 FTA 체결 현황



자료 : RTA database, WTO

* FTA 규모 : 세계 GDP 총 합에서 국가별 FTA 체결국의 GDP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RCEP : 우리나라는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RCEP을 체결함

*** 중미 : 우리나라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체결함

대한민국

FTA 체결 현황 : 총 22건 발효 59개국

FTA 체결 규모* : 85%





미국

FTA 체결 현황 : 총 14건 발효 20개국

FTA 체결 규모* : 10%



자료 : RTA database, WTO

* FTA 규모 : 세계 GDP 총 합에서 국가별 FTA 체결국의 GDP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중미 : 미국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5개국과 FTA 미-중미 FTA를 체결함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중국

FTA 체결 현황 : 총 22건 발효 22개국

FTA 체결 규모* : 14%



자료 : RTA database, WTO

* FTA 규모 : 세계 GDP 총 합에서 국가별 FTA 체결국의 GDP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ASEAN :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10개국)

***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5개국)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일본

FTA 체결 현황(EPA 포함) : 총 19건 발효 47개국
FTA 규모* : 78%



자료 : RTA database, WTO

* FTA 규모 : 세계 GDP 총 합에서 국가별 FTA(EPA) 체결국의 GDP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RCEP : 일본은 아세안(10개국),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RCEP을 체결함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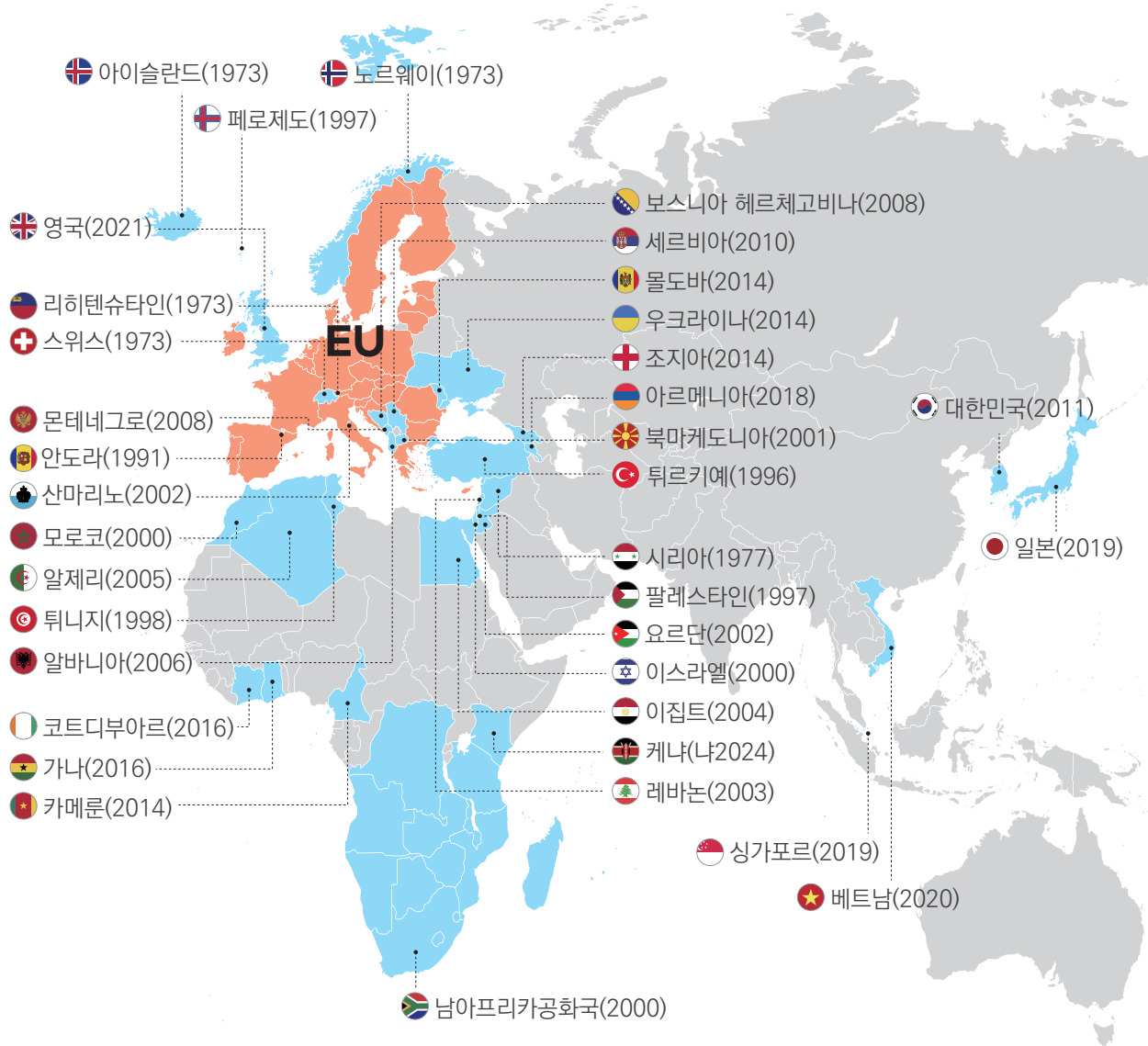




EU

FTA 체결 현황 : 총 48건 발효, 84개국 및 13개 국가령(PTA 포함)

FTA 규모* : 22%



자료 : RTA database, WTO

* FTA 규모 : 세계 GDP 총 합에서 국가별 FTA 체결국의 GDP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OCT(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보네르, 신트외스타티위스, 사바, 뉴 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윌리스푸투나,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 생피에르 미클롱, 생바르 텔레미, 그린란드(총1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있는 비유럽 지역 영토

*** EEA(European Economic Area) : EU 회원국(27개국)+EFTA 3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로 구성되었으며, 스위스는 양자 협정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알바니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몰도바·세르비아·코소보(총7개국)

■ 총교역대비 국가별 비중 상위 3개국



- ***** CARIFORUM : 카리브 지역의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총16개국), 단, 쿠바는 CARIFORUM 회원국이나 EU-CARIFORUM에 서명하지 않음
- ***** PACIFIC :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총4개국)
- ***** ESA(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코모로(총5개국)
- *****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앙골라(총7개국)
-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총5개국)

무역·원산지 리포트

TRADE & ORIGIN REPORT

December 2025 Vol. 04 (통권 52호)

(비매품)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한국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ISSN 3091-9576

「무역·원산지 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대표전화 ☎ 031.600.0701~3
www.origin.or.kr

무역·원산지 리포트

TRADE & ORIGIN REPORT

한국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



9 773091 957003
ISSN 3091-9576